



KOTRA 자료 21-298

중국 특허 실무 가이드



Contents

머리말	3
제 1 장 중국 특허 실무의 법적 근거	4
특허법	4
실시세칙	4
심사지침서	5
제 2 장 중국 특허 출원의 청구	7
출원절차	7
출원서류	10
출원수리	18
미리 알아두면 좋은 규정	19
제 3 장 중국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23
신규성(新颖性)	23
진보성(创造性)	23
명세서의 작성	25
발명의 설명	26
청구범위	30
심사의견의 처리 실무	34
심사의견서 이해	34
답변 코멘트 처리	43
심사의견서 답변	44
명세서 보정	44



제 4 장 중국 특허 출원의 등록	46
특허증 발급	46
분할출원 제출	46
존속기간 연장	47
연차료 관리	48
등록원부 발급	49
홍콩 및 마카오 출원	49
제 5 장 중국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50
거절결정불복심판	50
무효심판	54
제 6 장 중국 특허 침해 분쟁 구제	61
특허 행정결재	61
특허 소송	69
행정소송	71
민사소송	73
부록	82



머리말

2020 년 중국의 사회적 R&D 자금 총 투입량은 2 조 4000 억 CNY 로 5 년연속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내세우는 '기술혁신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다' 라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런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고 퀄리티의 혁신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제도가 기본보장(基本保障) 역할을 한다. 2021 년 9 월,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및 중국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 (2021 년~2035 년) 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 (2021-2035 年)>를 반포하여 지식재산권의 혁신, 운용, 보호, 관리 및 서비스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여 지식재산권제도가 경제 발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2020 년 중국의 발명특허 전체 출원량은 149.7 만건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하였고; 실용신안특허 전체 출원량은 292.7 만건, 전년 대비 29% 증가하였으며; 디자인특허 전체 출원량은 77 만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하였다.

본 가이드에서는 거대한 소비시장인 중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재산 권리 획득, 유지 및 행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국 특허법은 엄밀히 말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이다. 중국 특허법은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가이드는 발명특허 위주의 실무에 대해 설명하고 실용신안특허와 디자인특허도 비교하여 언급할 것이다.



제 1 장 중국 특허 실무의 법적 근거

중국의 특허 출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이하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실시세칙>(이하 실시세칙), <전리 심사지침서>(이하 심사지침서)에 근거한다.

특허법

2021 년 6 월 1 일부터 정식으로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제 4 차 개정은 과거 3 차례의 특허법 개정 내용을 기초로 12 년의 의견수렴 및 수정보완을 거쳐 2020 년 10 월 17 일에 최종적으로 통과된 법규다.

특허법 제 4 차 개정의 주요내용은  권리침해의 대가를 높이고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강화,  특허의 실시 및 운영을 돕고 특허의 공공서비스 역할을 확대,  특허 등록제도를 보완하고 특허심사의 질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제 4 차 개정된 특허법의 전문내용은 본 가이드의 부록을 참고할 수 있다.

실시세칙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하 CNIPA¹)에서 특허법의 제 4 차 개정에 맞추어 특허법 실시세칙의 개정도 적극 추진했으며, 이를 위해 2020 년 11 월부터 2021 년 1 월까지 <특허법 실시세칙 개정 건의(의견수렴버전)> 의견을 수렴했다.

¹ 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본 실시세칙은 현재 개정중이다.

■ 실시세칙과 아래에 나오는 심사지침서는 특허실무에 없어서는 안 될 실용적인 작업 메뉴얼이다. 현재 제 4 차 개정 특허법이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했으나 많은 신규 개정 내용과 관련된 절차와 실질적인 심사의 추진은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서의 개정 발효 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심사지침서

심사지침서는 특허법과 그 실시세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고 CNIPA 에서 특허의 출원과 청구를 처리하는 근거이자 기준이다. 중국에서의 모든 특허실무의 구체적 처리는 심사지침서를 의존해야 하기에 심사지침서는 특허실무자에게는 현실적인 의미가 크다.

특허출원과 특허심사의 실무를 가이드하고 규범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회경제발전의 새로운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CNIPA 에서는 심사지침서에 대해 수시로 상응된 수정을 한다. 현재 <특허심사지침서(2010)>는 2010 년 1 월 21 일부터 발효하여 2013 년 9 월, 2014 년 3 월, 2017 년 2 월, 2019 년 9 월, 2019 년 12 월, 2020 년 6 월, 2020 년 12 월에 수차례 수정을 진행하였으며 제 4 차 특허법의 전면 개정의 일환으로 심사지침서의 수정 작업도 발빠르게 진행 되고 있다. 2021 년 9 월에 수정 초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완료한 상황이다.

중국 특허 출원, 심사 및 등록 등 실무처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입법기관에서 제정한 특허법, CNIPA 국무원 행정부서에서 제정한 실시세칙, 심사지침서, 및 기타 행정법규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본 가이드에서는 중국의 현존 특허관



련 법규 및 곧 수정 반포하게 될 신규 규정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할 예정이다.



제 2 장 중국 특허 출원의 청구

출원절차

중국에서의 출원, 심사, 등록의 대략적인 절차는 1 출원청구가 되어 수리되면 출원서류에 대해 2 방식심사를 하게 되고, 방식심사 통과시 출원일/우선권일로부터 18 개월내에 3 공개가 되며, 출원일/우선권일로부터 3 년내에 심사청구가 된 발명에 대해서는 4 실질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심사관의 심사의견(이하 OA²)에 대해 답변하고 흠결해소시 5 등록되어 특허증을 발급하게 된다.

CNIPA 의 특허 출원 제출의 수리 및 심사는 특허법 제 3 조, 제 4 조, 제 17 조, 제 18 조, 제 19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를 따른다.

특허법 제 17 조에 의하면 중국 역내에 상주지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조직의 경우,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은 그 속지국과 중국간의 협의 또는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출원인은 중국에서 두가지 출원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파리협약³을 통한 중국 특허출원과 PCT⁴출원을 통한 중국 국내단계진입이다. 두가지 방식의 구체적인 출원, 심사, 등록 흐름도는 1 그림 1 과 같다.

특허법 제 18 조에 의하면 중국 역내에 상주지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외국조직의 경우, 중국에서의 특허 출원 및 기타 특허사무는 법적으로 설립된 중

2 Office Action, 심사의견통지서를 업계내에서는 OA 로 자주 부름

3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1883 년 파리에서 체결되었고, 각국의 특허제도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범을 규정하고 있음

4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의 약자, 파리조약 제 19 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국제적인 특허출원 절차요건의 통일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PCT 에 의한 국제출원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 또는 자국 특허청(수리관청)에 특허를 받고자 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PCT 국제출원서를 제출하면 각 지정국에서 정규의 국내출원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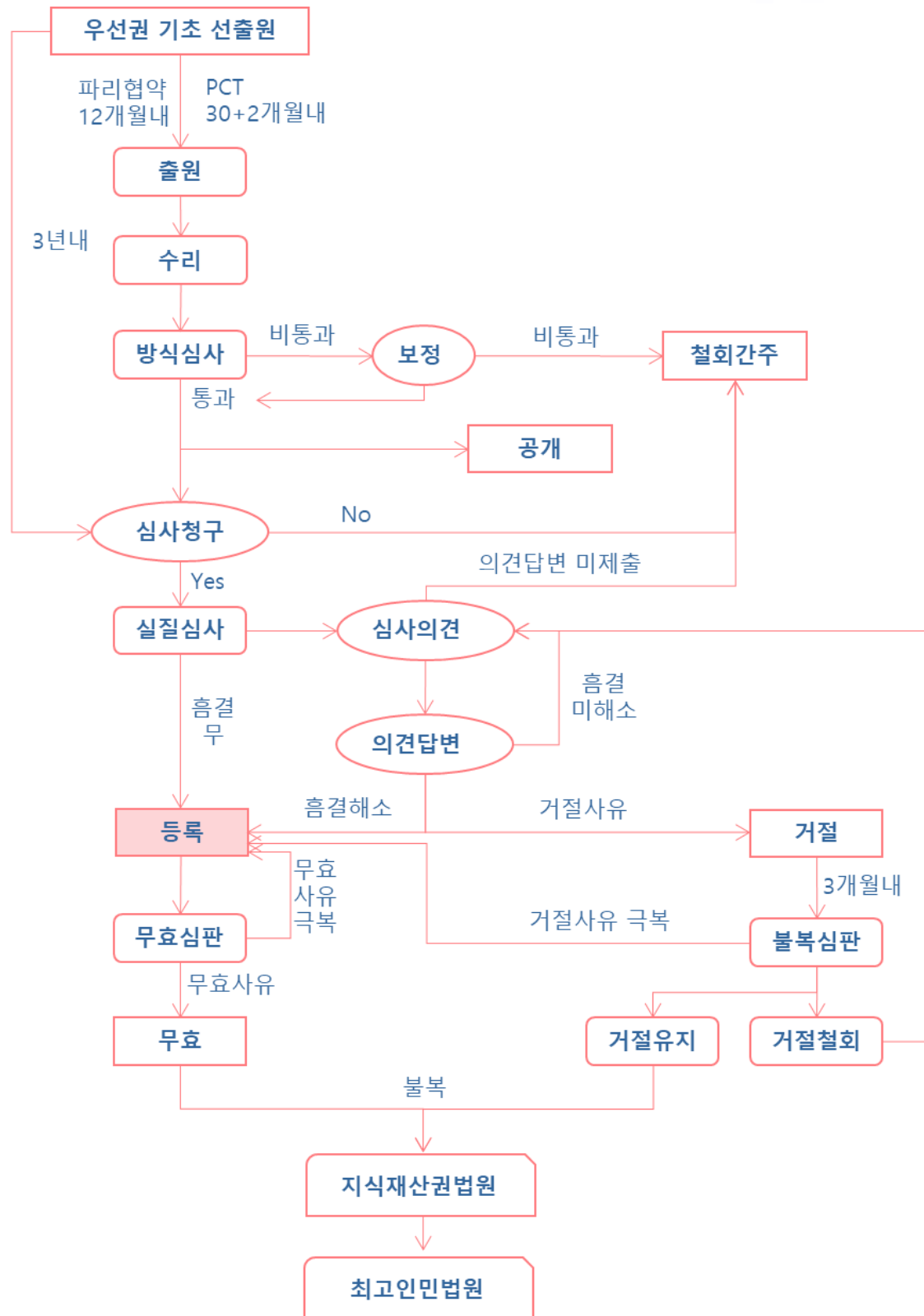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특허등록 절차



국 특허대리기구(이하 특허사무소)에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특허사무소에 공식적으로 출원위임을 하기 전 해외출원인은 상기 두가지 방식 중에서 결정해야 하며, 지시하고자 하는 출원제출 일자, 출원에 필요한 서류 및 정보를 준비해야 한다.

중국의 특허사무소는 해외출원인의 출원위임 지시를 접한 후 지정된 출원일자 전에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우선권을 주장하는 발명의 경우, 파리협약을 통한 출원은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출원완료를 해야 하고 PCT 출원으로 중국진입단계에 들어서는 발명은 최초의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내에 출원진입이 되어야 하며 이 기한은 2개월의 연장이 가능하다. 해당 2개월 연장은 사전 신고가 필요없으나 연장기간 동안 진입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가급적 30개월 내로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리협약	PCT
□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 우선권일로부터 12개월내 (발명, 실용신안) 6개월내 (디자인) □ 출원번호 획득 필요 서류 출원청구서 발명의 설명 권리청구서 도면(실용신안, 디자인) 간략설명 (디자인) □ 명세서 언어요구 중국어	□ 발명, 실용신안 □ 우선권일로부터 30개월 2개월 연장가능 □ 국내단계진입시 유형 지정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중 오직 한가지 유형 선택만 가능 □ 출원번호 획득 필요 서류 국내단계진입 성명 명세서(PCT공개와 일치) □ 명세서 언어요구 중국어

표 1 두가지 출원 방식 비교표



출원서류

CNIPA 가 규정하는 발명특허의 출원에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출원청구서, 위임장, 명세서(권리청구범위/청구항, 발명의 설명 및 그 요약서, 첨부도면 포함)이다. 출원청구서는 중국 특허사무소에서 작성하게 되나, 해외출원인은 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표 2 의 출원청구서(PCT 출원을 통한 중국 국내단계 진입의 경우 성명서)에 기재하게 될 정보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请按照“注意事项”正确填写本表各栏				此框内容由国家知识产权局填写	
⑦	发明名称 발명명칭			①申请号	
				②分案提交日	
⑧发明人	发明人 1		☐ 不公布姓名	③申请日	
	发明人 2	발명인	☐ 不公布姓名	④费减审批	
	发明人 3		☐ 不公布姓名	⑤向外申请审批	
⑨第一发明人国籍或地区 제1발명인 국적 居民身份证件号码				⑥挂号号码	
⑩申请人	申请人(1)	姓名或名称 청구인		申请人类型	
		居民身份证件号码或统一社会信用代码/组织机构代码 ☐ 请求费减且已完成费减资格备案		电子邮箱	
		国籍或注册国家(地区)		经常居所地或营业所所在地	
		邮政编码	电话		
		省、自治区、直辖市			
		市县			
		城区(乡)、街道、门牌号			

표 2-1 파리협약을 통한 특허출원의 청구서 (일부)

발명명칭

발명명칭은 통상 25 자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일부 화학분야의 발명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40 자까지 허용한다. 청구서 상의 발명명칭은 명세서의 발명명칭과 같아야 하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주제 및 유형을



밝혀야 한다. 발명명칭에 기술용어가 아닌 단어가 포함되어서는 안되고 명확하지 않거나 포괄적인 단어를 사용해서도 안된다.

발명인 성명 및 국적

발명인 성명은 중국어로 제출이 되어야 해서 사전에 중국어 성명 확인이 필요하다.  일부 외국인들의 중국어 한자 성명은 중국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거나 중국어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한자인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제출을 위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의 글로벌화로 인하여 다양한 국적의 연구원이 한 개 특허를 연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제 1 발명인의 국적을 기재해야 한다. 출원제출 완료 후 국적 변경이 가능하나 신원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발명인의 국적을 잘 확인해서 작성해야 한다.

 실무경험상 발명인의 사후 변경은 보다 엄격하고 어려우므로 발명인 정보는 사전에 잘 확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출원인 명칭 및 주소

모든 해외 출원인의 중국어 명칭/성함, 중국어 주소 및 국적이 제공되어야 한다. 외국기업의 명칭 및 외국인의 성함 특성상, 영문알파벳이 포함될 수 있으나 불필요한 보정 및 비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모든 영문은 중국어로 기재함이 바람직하다.

해외출원인의 주소는 일반적으로 두번째 행정 지역까지 기재를 한다. 예를 들면 한국 서울특별시 또는 한국 경기도와 같이 기재한다. 단, 출원인이 상세한 주소 기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특허사무소 위임시 명확하게 지시해야



하고 영문이 포함 된 주소도 중국어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우선권 주장 성명

해외출원인의 중국 특허출원은 거의 대부분 본국에서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 주장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 선출원의 수리기관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⑮ 要求 优先 权 声 明	原受理机构 名称	在先申请日	在先申请号	⑲ 不 宽 限 期 声 明 新 颖 性	☐ 已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为公共利益目的首次公开 ☐ 已在中国政府主办或承认的国际展览会上首次展出 ☐ 已在规定的学术会议或技术会议上首次发表 ☐ 他人未经申请人同意而泄露其内容
	우선권 성명				⑳ ☐ 本专利申请可能涉及国家

표 2-2 파리협약을 통한 특허출원의 청구서 (일부)

파리협약을 통한 특허출원은 12 개월내로 우선권 주장이 되어야 한다. 현규정에 의하면 12 개월이내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을 시 우선권을 주장하지 못하나, 개정 중인 특허법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서에 따르면 우선권 주장 만료일후 2 개월내 우선권 회복이 가능하다. 또한, 상기 세가지 우선권 정보(출원일, 출원번호, 수리기관 명칭) 중 한 가지라도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시, 우선권 주장이 청구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개정 중인 특허법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서에서는 우선권 주장 만료일 후 4 개월내 정보 수정이 가능하다. 물론 우선권 회복가능여부 및 정보 수정여부는 최종 개정 후의 특허법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서의 규정에 따를 것으로 정식 개정 전에는 12 개월의 우선권 마감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 우선권 주장시 과거 우선권 서류 부분 자체를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



다. 하지만 세계 각 국의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 프로젝트에 힘입어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간단하게 발급할 수 있다. DAS 시스템⁵을 통해 DAS 접근코드를 획득하여 출원시 코드를 등록하고 우선권의 출원번호만 기재하면 전자 우선권 증명서를 입수할 수 있다. 하여 출원인은 우선권 주장 희망시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당국 특허청에서 미리 DAS 접근코드를 발급 받아 특허사무소에 전달하면 된다.

특허사무소 정보

중국역내 상주지가 없는 해외 출원일 경우, 상술한 파리협약을 통한 중국출원 또는 PCT 국제출원을 통한 중국 국내단계진입을 진행하려면, 중국의 특허사무소에 위임하여 출원을 청구해야 한다. 단, 특허사무소라 명명된 모든 사무소가 전부 법적으로 특허대리,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출원인은 위임전 CNIPA의 자격승인을 받은 사무소를 잘 판단해야 한다. 법적으로 자격승인을 받은 특허사무소는  중화전국특허대리사협회(중국 전국 변리사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특허사무소에서는 출원청구서에 특허사무소 명칭, 특허조직코드, 두명의 변리사정보를 기재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중국의 일반적인 기업등록 규정과 특허사무소 자격획득 규정의 차이로 인해 일부 특허사무소의 명칭을 보유한 일반 기업은 특허조직코드가 없다는 것이다. 특허조직코드는 중국 변리사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⁵ Digital Access Service 시스템, WIPO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DAS 시스템을 통해 해외 출원 시 출원인이 해당국에 서면으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던 절차를 대체한다.



생물보전 정보, 유전자 서열목록, 유전자원 출처

바이오분야 생물재료가 언급이 된 발명일 경우 출원일(우선권 주장시 우선권일)전 CNIPA 에서 승인하는 국제보전기관에 생물보전을 진행해야 한다. 출원청구서에는 보전기관명칭 및 주소, 보전일자 및 코드, 생물재료의 분류명을 기재한다.  주의할 점은 해외출원인은 국제보전기관과 국내보전기관을 혼동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같은 보전기관에서 보전할지라도 국제보전과 국내보전은 그 루트가 다르며 출원인은 꼭 국제보전을 진행해야 할것을 명기해야 한다. 그외, 출원일로부터 4 개월내에 보전기관의 생물재료 보전증명과 생존증명을 제출해야 하므로 출원전 해당 재료의 생존상태를 잘 확인해야 한다.

유전자 서열목록은 명세서의 일부로 인정되지만 출원청구서 상 독립적인 청구란에 별도로 서열목록의 여부를 표기해야 하므로 특허사무소는 출원인에게 특별히 이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완성된 발명은 청구서에 그 유전자원의 출처 설명을 해야 하고 유전자원 출처 등기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 명세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중국 변리사도 출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겠지만 해외출원인도 해당 사안의 청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파리협약의 경우는 해외출원인이 제공한 상기 기본정보에 따라 출원이 이루어질 것이나, PCT 의 경우 특허사무소에서는 해외출원인이 제공한 PCT 출원번호에 따라 기본정보를 재확인할 것이다. 만일 PCT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권일, 출원인, 발명인 등 출원인이 제공한 기본정보가 PCT 공개서류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을 시 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재차 검토하고 출원제출을 한다.



상기 출원청구서에 기재하게 될 정보에 따라 해외출원인은 출원 전에 구체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물론 출원 필요자료인 위임장과 명세서도 준비해야 한다.

위임장

해외출원인의 의지에 따라 포괄위임장과 개별위임장 제출이 모두 가능하다. 출원청구와 동시에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같은 특허사무소에 다량의 안건 위임시 포괄위임장을 이용함이 편리하다. 포괄위임장으로 작성시 해당 출원인의 모든 특허출원제출은 해당 특허사무소에 위임이 가능하며 포괄위임장을 CNIPA 에 등록시 향후의 출원청구서에  포괄위임장 등록코드만 기재하면 되기에 위임장 서류를 반복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단, 개별사건의 출원에 한해 위임을 원할 경우 개별위임장에서 사건번호를 기재할 수 있고 이는 다른 건에서 특허사무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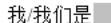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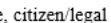
专利代理委托书 (中英文)  POWER OF ATTORNEY 	
 我/我们是  的公民/法人, 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兹委托  (代码 ) , 并由该机构指定其代理人  、  代为办理发明创造名称为  	
☐ 国家申请号为  的发明创造, 在中华人民共和国申请专利以及在专利权有效期内的全部专利事宜。 	
☐ 国际申请号为  的专利申请, 在指定局或选定局程序中的全部专利事宜。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we, citizen/legal entity of  hereby authorize  (Code: ) to appoint its patent attorney(s)  、  to act for me/us with the invention entitled  and 	
☐ whose national application number is  and handle all related matters concerning about the patent right. 	
☐ whose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is  and handle all related matters concerning about the patent right in the progress of designated office or selected office. 	
委托人姓名或名称  Authorized by (Name)  	
委托人盖章或签字  Seal or Signature  	
(委托单位无印章的由法人代表签字) 	
委托日期  Date of Authorization  年  月  日 	
	
被委托专利代理机构印章  Seal of the Authorized Agent  	

표 3 위임장 증영문 대조본



명세서 (권리청구범위, 발명의 설명, 첨부도면, 요약서)

발명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명세서의 작성은 해외출원인의 본국 언어로 미리 작성 된 경우가 다수다. 단 중국 특허출원시  전부 중국어로 작성 되어야 하고 중국 특허법의 방식요건, 실질요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위임을 받은 특허사무소 변리사는 규정에 따라 잘 정리를 할 것이나 해외출원인도 알아 둘 필요가 있어 우선 본 장에서는 상기 서류의 일부 방식요건에 대해 설명 하도록 한다.

권리청구서는 권리청구범위의 항에 맞춰 아라비아 숫자로 순서에 맞게 기재 해야 하고, 숫자 앞에 권리청구 또는 권리항 등 단어가 있어서는 안된다. 권리 청구서에는 화학식 또는 수학식이 있을 수 있고 필요시 장표도 있을 수 있으나 삽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권리청구서는 아라비아 숫자로 페이지를 표기해야 한다.

명세서는 첫 페이지 첫 줄에 발명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고 해당 명칭은 출원 청구서의 명칭과 같아야 한다. 명세서는 격식상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실시방법 부분을 포함해야 하고 각 부분의 타이틀로 표시해야 한다. 명세서 문자로의 진술부분에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경우 응당 첨부도면이 있어야 하고, 첨부도면이 있는 명세서는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부분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 명세서 문자진술부분에도 화학식 또는 수학식이 있을 수 있고 장표도 있을 수 있으나 삽화가 있어서는 안된다. 현존 심사지침서에 의하면 상술한 바와 같이 바이오관련 발명에 있어 유전자 서열목록이 포함 되는 발명은 해당 서열목록을 따로 제출해야 하고 쪽수를 표기해야 한다. 단 개정 중인 특허법 실시세칙에서는 서열목록(基因序列表)의



독립적인 기재요구를 삭제하여 이 부분은 나중에 심사규정을 확인해서 진행이 필요하다.

첨부도면은 컴퓨터 내치 도구로 도면제작을 해야 하고 흑백으로 제작이 되어야 하며 선이 균일하고 선명하며 두께가 있고 착색이 없으며 수정이 없이 제작되어야 한다. 도면은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 매김이 되어야 하고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이 없었던 도면이 있어서는 안된다. 도면은 같은 비율로 제작이 되어야 하고 부분적으로 확대된 도면이 있을 수 있다. 필요시 도면에 문자가 포함될 수 있으나 다른 주석(注释)이 있어서는 안되며 도면 내의 문자 또한 모두 중국어로 기재되어야 한다.

요약서는 출원시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한다. 요약서의 문자로 진술하는 부분에는 발명의 명칭과 해당 기술분야를 기재하고 명확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진술해야 한다. 요약서에는 제목이 포함되지 않으며 300 자이내로 정리되어야 한다. 첨부도면이 있는 발명은 해당 발명 기술방안(技术方案)의 주요기술 특징을 반영할 수 있는 한 개 도면을 요약서 대표 도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 이상 권리청구서, 명세서, 첨부도면, 요약서의 모든 내용은 전부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한다. 파리협약을 통한 중국 본토 출원이든 PCT의 중국본토단계 진입이든 권리청구서, 명세서는 전부 중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 PCT를 통한 중국단계 진입의 경우, 중국단계진입시 통상 PCT 국제공개서류를 기반으로 중국어로 번역 후 출원서류를 제출한다. 단, PCT 국제단계에서 출원서류에 대해 보정이 있는 경우, 보정의 근거가 되는 PCT 제 19 조, 34 조 또는 28/41 조 조약에 대해 구분을 하여 변리사가 번역의 기반이 되는 보정이 문



제없도록 확인하고 그 심사의 기초가 되는 서류에 대해 정확하게 성명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할 수 있다. 제 19 조, 34 조에 의한 보정의 번역문은 출원청구 즉 중국단계진입성명과 동시에 제출하거나 출원 후 2 개월내 제출이 가능하나 제 28 조, 제 41 조에 의한 보정 번역문은 출원청구와 동시에만 제출 가능하다.

출원수리

출원청구는 서면 제출, 전자 제출이 모두 가능하나 현재 거의 모든 출원은 전자제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자제출시 파리협약의 경우, 출원제출 당일 CNIPA로부터 출원서류제출에 대한 접수장을 받을수 있고, 출원제출 다음날로 출원번호를 발급받는 동시에 출원료 납부통지서를 전달받게 되며 공식적인 출원수리통지서를 접수하게 된다. 출원료 납부통지서에는 납부마감일을 명시하게 되며 해당 마감일전에 출원료 납부를 완료하지 않을 시 출원은 취하 된다. 수리통지서 발급후 CNIPA에서는 방식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형식적 흠결이 없을 시 초보심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하게 된다. 형식적 흠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정통지서를 발급하며 기한내 흠결 해소후 초보심사합격통지서를 발급한다. 초보심사합격통지서의 발급은 출원제출단계가 문제없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출원일(우선권일)로부터 18 개월의 공개단계의 진입을 기다리게 된다. 출원제출과 동시에 심사청구가 된 사건은 공개단계진입과 동시에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하게 되며 심사관 배분과 심사의견통지서를 기다리게 된다.



불수리 상황 회피(回避)

상술한 출원 필요 제출서류 및 그 기재정보에 청구서, 명세서, 실용신안의 첨부도면이 없는 경우 출원청구는 불수리 된다. 또한 이런 서류에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기재가 뚜렷하지 않을 경우, 청구서에 출원인 명칭 또는 주소가 빠진 경우, 중국역내에 상주지가 없는 출원인이 중국 특허사무소에 위임을 하지 않는 경우, 중국역내에서 완성된 발명이나 해외출원전 비밀심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특허유형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는 불수리 통지서가 발급 된다.

■ 출원 불수리시 불수리 사유를 극복하여 재출원이 가능하나 이럴 경우 출원일은 재확정이 되고 우선권 마감일 전에 신속히 처리해야 하기에 가급적 불수리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최초 출원시 철저히 준비가 되어야 한다.

미리 알아두면 좋은 규정

중국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는 객체

중국에서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는 실질심사단계에서 진행하나 출원청구시 제출되는 권리청구서, 발명의 설명의 구체적 기재내용에 특허권 부여가 불가능한 주체가 포함될 시 출원단계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다(구체적으로 특허법 제 2 조 2 항, 제 5 조, 제 25 조 참조). 특히 특허법 제 25 조에 따른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객체에서 4) 동물과 식물 품종과 관련하여 해외 출원인들은 종종 식물품종을 권리청구항으로 기재하여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 규정의 차이로 인해 식물신품종이 해외에서는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도 있으나 중국에서는 오로지 식물품종권으로만 보호를 받을 수 있



다.

명세서 중 특허권의 부여대상이 아닌 객체가 포함이 된 경우, 특허사무소에서 사전 보고를 할 수도 있으나, 실질심사단계에서 삭제를 통해 거의 극복할 수 있는 흠결이기에 심사의견과 함께 전달을 받을 수도 있다. 심사의견 답변시 보다 많은 작업량이 염려된다면 상기와 같은 흠결은 출원단계 명세서 준비시 검토 가능하다.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

특허법 제 4 차 개정에서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의 경우를 추가하여 특허출원된 발명창조가 출원일 이전 6 개월 내에, 아래에 나열한 사항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국가의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시, 공공 이익의 목적을 위해 최초로 공개한 경우, 2)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또는 승인한 국제 박람회에 최초로 전시한 경우, 3) 규정된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에 최초로 발표한 경우, 4)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타인이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이다. ■ 신규성 상실 예외주장에 대한 해외 다른 국가의 규정은 보다 관대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중국의 상기 규정 2), 3)과 같은 경우 관공서에서 인정을 한 박람회, 학술/기술회의가 제한되어 있고 4)에 대한 서류 요구도 보다 엄격하므로 중국 출원의향이 있는 경우 최초 공개가 되기 전 미리 출원준비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공개

신속한 공개와 동시에 실질심사단계의 신속한 진입을 원하거나 단순히 신속한 공개를 원할 경우, 조기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조기공개 청구는 출원과 동



시에 제출해야 하며 기타 부가요건이 없이 출원청구서의 해당 란에 표기만 필요하다.

실질심사청구

특허의 실질심사는 출원인의 청구에 의한다. 실질심사는 출원일(우선권일)로부터 3 년내 제출이 가능하나 해외출원인의 경우, 출원청구와 동시에 실질심사 청구지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 출원과 동시에 실질심사 청구시, 실질심사청구 대리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는 중국 특허사무소가 대부분이다. 3 년 마감일까지 대기하여 실질심사청구시 마감일 전 3 개월 내 CNIPA 의 기한마감전통지서를 대리사무소에서 전달받게 되는데 이러한 모니터링으로 별도의 대리비용 발생 하는지 여부도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자진보정

실질심사청구를 제출하는 동시에 한 번의 자진보정의 기회가 있다. 실질심사단계진입 통지서 접수 후 3 개월 내 자진보정의 기회가 두 번 있다.

비밀심사

특허법 제 19 조에 의하면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은 중국 역내에서 완성 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해외에 출원할 시 응당 사전에 비밀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로써 해외출원인의 해외 선출원을 우선권 기반으로 중국에 출원한 안건에 대해서는 비밀심사의 필요가 없게 되나, 중국 역내에서 발명 완성이 되었으나 해외출원인의 명의로 우선권을 주장하지 않고 최초로 중국에서 특허출원한 경우, 별도로 비밀심사청구를 제출해야 함을 명기해야 한다.



심사연기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서의 의견수렴버전에 의하면 발명특허와 디자인특허에 대한 심사 연기신청이 가능하다. 심사연기는 1 년, 2 년 또는 3 년 모두 가능하며 발명은 실질심사 청구시, 디자인은 출원 청구시 심사연기 청구를 제출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전략상 필요시 관련 규정에 대한 확정 개정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자 출원

심사지침서 의견수렴버전에서는 같은 출원인이 동일자(출원일을 말함)로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발명특허의 출원도 청구하고 실용신안의 출원도 청구할 경우, 이미 등록이 된 실용신안에 대응되는 발명특허의 심사는 4 년 후로 연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원인으로 인한 심사의 연기는 특허권 존속기간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 동일자 출원인은 해당 규정을 숙지해야 한다.



제 3 장 중국 특허 출원의 실질심사

중국에서는 특허 출원 후 수리접수, 공개를 거쳐 실질심사단계에 진입한다. 실질심사단계 진입 후 실질심사의견통지서를 기다리게 된다.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요소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신규성, 진보성, 실용성(산업적인 이용 가능성)이 필요하다. 아래는 앞서 말한 세가지 요소의 개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대신 관련된 중국의 특별한 규정에 대해 짚어보도록 한다.

신규성(新颖性)

저촉출원(抵触申请)

특허법 제 22 조 2 항에 의하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신규성을 판단함에 있어, 본 출원의 출원일 이전에 임의 기관이나 개인이 동일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CNIPA 에 선출원하였고 본 출원의 출원일이후에 공개되었을 경우, 본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하게 되며 그 선출원을 저촉출원이라 한다.

주의할 것은 2008 년 특허법 제 3 차 수정 전 동일한 출원인의 선출원은 저촉출원의 개념에 속하지 않았지만 현 특허법은 동일한 출원인의 선출원도 저촉출원으로 판단한다. 하여 일련의 기술 연관성이 있는 발명출원이 본인의 선출원에 의해 신규성이 파괴되지 않도록 명세서 작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

진보성(创造性)

특허법 제 22 조 3 항에 의하면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발명이 특출한 실질적인 특징이 있고 현저한 진보가 있어야 그 발명이 진보성을 구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출한 실질적인 특징의 구비여부 판단은 중국 심사실무상 3 단계의 판단으로 진행된다. 1)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권리청구 기술방안에 대해 가장 근접하는 종래기술을 확정, 2)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권리청구 기술방안과 가장 근접하는 종래기술을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을 확정하고, 해당 구별특징이 가져온 기술효과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확정, 3) 보호하고자 하는 발명의 권리청구 기술방안이 당해 기술영역의 당업자가 자명할 수 있는지 판단, 즉 종래기술에서 상기 구별기술특징에 가장 근접하는 종래기술을 응용하여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상기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계시(启示)를 주었는지를 판단, 만일 종래기술에 상기 계시(启示)가 존재한다면 상기 권리청구의 기술방안은 자명한 것으로 특출한 실질적 특징이 없고 반대로 종래기술에 상기 계시(启示)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술방안은 자명하지 않으며 특출한 실질적 특징이 있다.

현저한 진보의 구비여부 판단은 유익한 기술효과가 있는지를 고려하게 되는 바 1) 종래기술 대비 더 훌륭한 기술효과가 있는지, 2) 기술이 다른 기술방안을 제공하여 기술효과가 종래기술 또는 그 이상의 수준에 달하는 지, 3) 관련 선행기술의 발전 흐름을 대표하고 있는지, 4) 기타 방면에서 현저한 적극적인 기술효과를 구비하는지로 유익한 기술효과를 구비함을 판단하고 현저한 진보가 있는지를 판단한다.

실질심사단계의 업무처리는 주로 중국 특허사무소의 변리사에 의해 완성이 되고 출원인은 실질심사의견통지서의 전달, 실질심사의견 답변 의견, 실질심사



의견 답변진술 내역들에 대해 검토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해야 한다. 출원인의 권리확보가 보다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고 변리사의 작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본 가이드에서는 변리사의 업무내용인 심사의 기반이 되는 명세서인 권리 청구서, 발명의 설명의 작성과 실질심사의견 답변의 전반적인 처리실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한다.

명세서의 작성

특허법은 본 가이드의 제 2 장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명세서의 방식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실질적요건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다. 최초 출원된 해당 명세서의 내역은 실질심사단계의 심사 기반이 된다.

표 4 명세서 작성 요구 요약

	요건	구성
발명의 설명	명료 완전 실시 가능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 기술방안 유익한 효과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 구체적 실시방식
권리범위	발명의 설명에 근거 명료 간결	전제부, 특징부 인용부분, 한정부분



발명의 설명

특허법 제 26 조 3 항에 의하면 명세서 중 발명의 설명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영역의 당업자가 충분히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2) 명료하고 3) 완전하게 설명해야 한다. 제 26 조 3 항의 흠결이 존재할 시 심사의견통지서가 발급이 되며 해당 흠결을 극복하지 않을 시 출원은 거절된다. 본 조항은 또한 등록 된 특허의 무효사유가 되기도 한다.

발명의 설명의 명료함은 1) 주제가 명확하고 2) 표현이 정확 함을 가리킨다.

발명의 설명의 완전함은 1) 발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적인 내용, 기술분야, 배경기술, 도면에 대한 설명 등, 2) 발명이 구비하는 신규성, 진보성, 실용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내용,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 그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방안, 유익한 효과 등, 3) 발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내용, 구체적인 실시예 등을 포함함을 의미한다.

발명의 설명의 실시 가능함은 해당 기술영역의 당업자가 기재된 내용에 따라 그 발명을 실시하여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예측 된 기술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가리킨다.

제 1 장에서 소개한바와 같이 명세서 발명의 설명은 기술분야, 배경기술, 발명의 내용,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 구체적인 실시예의 순서대로 기재가 되어야 한다.

1) 기술분야 :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술방안이 속한 기술분야를 명시해야 하고 직접 이용된 기술분야를 기재해야 한다. 기술분야는 IPC 분류의 세부적인



위치와 관련이 된다. ▣ 기술분야 부분에서 심사의견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으나 기술분야의 확정은 신규성, 진보성 판단에서 실질적 의미가 있으므로 해당 기재요구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2) 배경기술: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이해, 검색, 심사하는데 유용한 배경기술을 명시해야 하고, 가능한 경우에는 배경기술의 출처문헌을 인용해야 한다.

배경기술의 기재는 가장 근접하는 배경기술을 진술 함이 좋다. 해당 기술분야내의 기술현황을 소개하고 본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의 핵심기술과 관련된 기술현황을 기재할 수 있다. 넓은 범위에서의 기술분야 및 좁은 범위에서의 기술분야 방면으로 모두 기재가 가능하다. ▣ 넓은 범위에서는 해당 기술분야의 전반적 상황을 설명하고, 좁은 범위에서는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의 구체적 기술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3) 발명의 내용: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 및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용된 기술방안을 명시하고, 아울러 종래기술과 대비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유익한 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 하기의 순서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기재할 수 있다. ▣ 1) 객관적으로 종래기술에 존재하는 기술의 결함을 평가한다. 물론 본 발명의 장점과 대비되는 부분을 기재한다. 2) 실무경험상 종래기술의 결함이 크게 언급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니나 본 발명의 우세에 상대하여 대응되는 열세로 기재할 수 있다. 3) 종래기술 결함에 맞서 본 발명의 장점을 정면으로 나열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

- **기술방안 :** 특허의 핵심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기술방안이다. 기술방안의 진술은 상세할수록 좋다. ▣ 1)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가 어떤 기술적 방



안을 통해 실현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재해야 하며 발명의 각 부분 개선점 및 그 대응되는 기술방안을 상세하게 진술해야 한다. 2) 기술방안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로서 발명의 목적을 위해 적용한 기술조치 즉 기술수단으로 이루어진 기술구상이다. 기술방안은 명료하고 완전하게 구조, 조직, 형태 등 기술 특징과 어떤 작용, 원리를 통해 실현되는지 당업자가 이해할 수준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3)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바이오 등 부동한 영역의 제품 또는 방법 발명의 기술방안은 부동한 방식으로 기재가 된다.

- **유익한 효과** : 발명이 종래기술과 비교하여 가지는 유익한 효과를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사실상 유익한 효과는 해결하고자 하는 배경기술(背景技術) 기술문제 부분에서 기재하였던 ■ 종래기술의 결함 대비 본 발명의 기술이 가지는 우위를 기재한다. 특히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 대비의 장점을 기재한다. 향후 진보성 쟁변에서 유익한 효과 부분의 기재여부도 관건이 되므로 해결하고자 하는 ■ 기술문제 또는 목적에 일일이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익한 효과는 발명의 구조적 특징에 대한 분석과 이론적 설명을 상호 결합하거나 실험 데이터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첨부도면에 대한 설명 : 첨부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도면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고 도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야 한다.

5) 구체적 실시방식 : 구체적 실시방식에서는 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최적의 방식을 상세히 명시하고, 필요시에는 예를 들어 설명한다. 발명을 실시하는 최적의 구체적인 실시예는 발명의 설명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며, ■ 발명을 충분히 공개, 이해 및 실시하고, 청구범위를 지지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므로 당업자가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재가 필요하다.



명세서에 첨부도면이 있을 시 구체적 실시예에서는 도면과 대응되도록 설명해야 한다. 모든 첨부도면은 전부 문자로 설명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당업자가 도면을 보지 않고도 기술방안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실시예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최적의 구체적 실시예를 설명한 것이다. 실시예의 수는 발명의 성격(性质), 해당 기술분야, 종래기술의 현황 및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 기재한다. 하나의 실시예로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방안을 포괄하여 지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실시예만 기재해도 된다. 청구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가 비교적 넓고, 그 기초의 기술특징을 하나의 실시예로부터 근거를 찾아 낼 수 없을 때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지지하기 위하여 최소 2 개 이상의 다른 실시예를 기재해야 한다. 청구항이 수치범위와 관련되는 때에는 양단 수치 부근의 실시예를 기재하며, 수치범위가 비교적 넓은 때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중간수치의 실시예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품발명에 대해서는 실시방식 또는 실시예에서 기계구성, 회로구성 또는 화학성분을 기재하며, 제품을 구성하는 각 부분 상호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작동 가능한 제품은 당업자가 기재된 구성만을 통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이해하고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작동과정 및 조작절차(操作步骤)를 설명한다.

방법발명에 대해서는 그 절차를 기재하며, 다른 파라미터 또는 파라미터 범위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는 기술조건을 포함한다. 구체적 실시예 부분에는 가장 근접하는 종래기술 또는 가장 근접하는 종래기술과 공유하는 기술특징은 상세하게 작성하지 않지만 종래기술과 구별되는 기술특징과 종속항의 부



가기술특징은 당업자가 그 기술방안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게 작성한다.

청구범위

청구범위는 향후 출원인이 특허권을 향유할 수 있는 보호를 받는 기술의 범위이다.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을 근거로 발명의 기술특징을 설명하고, 명료하고 간결하게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표현해야 한다. 기술특징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고 구성요소간의 상호관계일 수도 있다.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 및 특허법 실시세칙 제 19 조 내지 22 조 는 청구항의 내용 및 그 기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구항의 유형

청구항은 성격에 따라 2 가지 기본유형, 즉 물건의 청구항과 활동의 청구항으로 구분하며, 간단하게 제품 청구항과 방법 청구항이라고 칭한다. 물건의 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제품, 물질, 재료, 공구, 장치, 설비 등의 청구항이 있으며, 활동의 청구항에 속하는 것에는 제조방법, 사용방법, 통신방법, 처리방법 및 제품을 특정용도에 사용하는 방법 등의 청구항이 있다. 청구항을 유형에 따라 구분하는 목적은 청구항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함이다.

독립 청구항 및 종속 청구항

청구범위에는 적어도 하나의 독립항이 있어야 하며, 이에 종속항을 포함할 수 있다.



독립 청구항은 발명의 기술방안을 전체적으로 나타내며 기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한다. 필수적인 기술특징은 발명이 그 기술문제를 해결함에 없어서는 안되는 기술특징을 가리킨다. 그 필수적인 기술특징의 집합은 충분하게 발명의 기술방안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하며, 배경기술에 진술된 다른 기술방안과 구별될 수 있어야 한다.

청구범위에 있어서 독립 청구항은 가장 넓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갖는다. 청구범위에는 적어도 하나의 독립 청구항이 있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독립항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독립항을 제 1 독립 청구항이라고 하며, 기타 독립항은 병렬 독립 청구항이라고 한다.

만약 하나의 청구항이 다른 동일유형의 청구항에 있는 모든 기술특징을 포함하고 그 다른 청구항의 기술방안에 대하여 추가적인 한정을 하게 되면 이 청구항은 종속 청구항이 된다. 종속 청구항은 부가적인 기술특징을 사용하여 인용한 청구항을 추가적으로 한정하게 되므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는 인용한 청구항의 범위 내에 속한다. 상기 종속항의 부가적 기술특징은 인용한 청구항의 기술특징을 더욱 한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기술특징을 부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청구범위에 대한 요구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은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을 근거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실시세칙 제 19 조 제 1 항은 청구범위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특징을 설명해야 하며,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발명의 설명에 근거할 것 (명세서의 뒷받침을 받을 것)** :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는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에 의해 지지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청구항 중 보호를 받고자 하는 기술방안은 당업자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한 내용으로부터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기술방안이어야 하며 발명의 설명의 기재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기능적 한정 : 통상 제품 청구항은 가급적으로 기능이나 효과로 발명을 한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기술특징이 구조적 특징을 사용해서는 한정할 수 없거나 또는 구조적 특징을 사용하여 기술특징을 한정하는 것보다는 기능이나 효과특징을 사용하여 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며, 발명의 설명중에 규정된 실험이나 조작 또는 해당 기술분야의 관용수단을 통하여 그 기능이나 효과를 직접적이고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기능이나 효과 특징을 사용하여 발명을 한정하는 것을 허용한다. 청구항에 포함된 기능적 한정의 기술특징에 대하여는, 상기 기능을 실시할 수 있는 모든 기술특징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능적 특징을 포함한 청구항에 있어서는 그 기능적 한정이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지지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만약 청구항에 한정된 기능이 실시예 중에 기재한 특정한 방식에 의해서만 실시되는 경우, 또한 당업자가 그 기능이 발명의 설명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대체방식을 사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명료하게 이해할 수 없거나, 당업자가 그 기능적으로 한정된 방법에 포함될 수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식에 의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심이 있다면, 청구항에서 기타 대체방식이나 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방식을 포괄하는 기능적 한정을 사용했다면 명세서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명료할 것** : 청구범위가 명료한지 여부는 보호범위를 확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청구범위가 명료하다는 것은 매개 청구항의 유형이 명료, 매개 청구항의 보호범위가 명료, 청구범위를 구성하는 모든 청구항이 전체로서 명료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간결할 것** : 청구범위가 간결해야 한다는 것은 첫째로 각 청구항이 간결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로 청구범위를 구성하는 모든 청구항이 전체로서 간결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청구범위의 작성

청구범위가 명세서의 뒷받침을 받을 시 청구항이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포괄적 한정을 하는 것을 인정한다. 일반적으로 포괄방식은 상위개념을 사용한 포괄 및 병렬선택법을 사용한 포괄이다.

- **독립항의 작성 규정** : 독립항에는 1) 전제부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방안의 주제명칭 및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주제와 가장 근접하는 종래기술이 공유하는 필수적인 기술특징을 기재한다. 2) 특징부에서는 '그 특징은 ...' 과 같은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가장 근접하는 선행기술의 기술특징과 구별되는 점을 기재한다.

이러한 특징부와 전제부에 기재된 특징은 서로 결합하여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한정한다.

- **종속항의 작성 규정** : 종속청구항에는 1) 인용부분에서 인용하는 청구항의 번호 및 그 주제명칭을 명시하고 2) 한정부분에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부가하는 기술특징을 명시한다.



심사의견의 처리 실무

심사의견에 대한 처리는 변리사무에서의 핵심이고 실질심사단계의 주요사무이다. 출원인이 변리사를 위임하여 실질심사의견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특허권 획득에 유리하다.

심사의견서 이해

실질심사의견통지서(이하 OA)가 발급이 되면 변리사로부터 정확한 답변마감일 및 출원인이 결정해야 할 사항을 확실하게 전달받을 것이다. 보통 제 1 차 심사의견통지서는 통지서 접수 후 4 개월 내로 답변해야 하고, 제 2 차 심사의견통지서부터는 2 개월 내로 답변해야 한다.

변리사는 OA 접수시 우선 심사의견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고 심사의견에 대해 이해를 하고 대응되는 답변 코멘트를 전달하게 된다. 실시세칙 제 53 조에 의하면 심사의견의 거절사유는 13 개 (실시세칙 의견수렴버전에서 한개 조항 추가)이다. 변리사는 이런 거절사유를 분류, 분석하고 심사관이 검색한 종래기술 문헌이 있을 시 해당 문헌에 대해 하나하나 비교, 분석한 후 대응되는 극복 방안을 전달한다.

실시세칙 제 53 조에서는 심사의견중의 거절사유를 하기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 38 조 규정에 의하여 발명 특허출원이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해야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1) 출원이 특허법 제 5 조, 제 25 조 규정에 속하거나, 특허법 제 9 조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없는 경우, 2) 출원이 특허법 제 2 조 제 2 항, 제 19 조 제 1 항(2021 년 실시세칙 수정 의견수렴버전 중



추가, 원 특허법 20 조 1 항), 제 20 조 제 1 항 (특허법 개정 추가 신규내용), 제 22 조, 제 26 조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제 31 조 제 1 항 또는 실시세칙 제 20 조 제 2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 한 경우, 3) 출원의 보정이 특허법 제 33 조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분할된 출원이 실시세칙 제 43 조제 1 항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이다.

특허법 제 5 조의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발명창조

특허법 제 5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창조의 공개, 사용, 제조가 법률, 사회적 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부여받을 수 없다. 특허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확보하거나 이용하고, 이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본 조항에 대해서는 초보심사단계에서도 선명한 흠결이 있는지 일차적으로 심사한다. 예를 들면 도박설비/방법에 관한 발명 등과 같이 선명한 법률, 행정법규 위반 발명인 경우,  초보심사단계에서 심사의견통지서를 발급받게 되고 극복 불가시 거절이 된다. 실질심사단계에서는 재차 추가적 심사를 진행하며 삭제 또는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충분한 해명 또는 보정할 것에 관한 OA를 발급받게 되며 극복 불가시 거절이 된다.

본 조항에 대한 심사답변은 대부분 대응되는 발명내용을 삭제하여 극복한다.

특허법 제 25 조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객체

특허법 제 25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허법을 부여받을 수 없는 객체에 속한다. 1) 과학적 발견 2) 지능 활동의 법칙과 방법



3)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4) 동물과 식물의 품종 5) 원자핵 변환방법 및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얻은 물질 6) 평면 인쇄물의 도안, 컬러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한 주로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디자인은 모두 특허권을 부여 할 수 없다. 다만 제 4) 항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본 조항에 대해서도 초보심사단계에서 일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선명한 흠결이 있을 시 OA 를 발급하게 된다. 출원인은 지정기한내에 의견진술을 진행해야 하며 흠결치유 불가시 출원은 거절이 된다. 단, 초보심사단계에서 분리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시 실질심사단계에서 처리한다.

제 2 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 국가 간의 법 조항 규정이 다르므로 본 조항 4)항과 같은 경우 삭제하는 방법으로 OA 를 극복하나, 2)항의 경우, 보호받고자 하는 주제 명칭에 "프로그램"과 같은 권리청구항이 있을 시 그 실제 기술방안이 어떠하든 본 조항의 거절사유가 발생하므로 명세서 작성시부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청구항에서 한정한 내용이 오로지 프로그램 자체거나 단순한 연산일 경우,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객체이므로 상기 연산이 특정 기술영역에 응용이 되어 기술방안을 형성하고 기술수단을 적용하여 기술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기술효과를 가져오도록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특허법 제 9 조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

특허법 제 9 조 제 1 항은 동일한 발명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 제 9 조 제 2 항은 2 명 이상의 출원인이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특허권은 최초의 출원인에게 부여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본 조항이 규정하는 동일한 발명은 출원 중의 사건이다. 동일한 발명창조가 되는 선출원이 종래기술 또는 저촉출원일 경우,  거절사유는 제 22 조 신규성 사유로 적용된다.

두개의 동일한 발명이 동일자(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일)에 출원되었고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을 요구하거나 하나의 출원만 선택하도록 각각 통지한다. 출원인이 의견진술답변을 진행하고 보정을 하였으며 기타 거절사유가 없을 경우, 특허권을 부여 한다. 단, 의견답변 또는 보정이 기한내에 제출이 되지 않았거나 여전히 본 조항에 부합되지 않을 시 두개의 출원이 모두 거절된다.

두개의 동일한 발명이 동일자(우선권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권일)에 출원되었고 출원인이 부동한 경우, 특허권을 부여하는 기타 조건에 모두 부합할 시에는 출원인에게 자체적으로 협상하여 출원 보류여부를 확정하도록 통지한다. 출원인이 답변하지 않을 시 출원은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두건 모두 본 조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이유로 거절된다.

 주의할 것은 의견수렴중에 있는 심사지침서에 의하면 동일한 출원인이 동일자(출원일을 말함)에 출원한 하나의 발명과 하나의 실용신안이 동일할 경우, 실용신안이 등록된다면 발명의 심사는 4 년 이후로 연기된다. 발명의 심사과정에서 실용신안이 존속기간내에 있을 시, 발명에 대한 보정을 통해 본 조항의 어긋남을 극복할 수 있고, 실용신안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극복할 수도 있다.

특허법 제 2 조 제 2 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객체



특허법 제 2 조 제 2 항에서는 발명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발명이라 함은 제품, 방법 혹은 그 개선을 위해 제기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가리킨다.

기술방안은 1)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수단이어야 하고 2) 기술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3) 기술효과를 얻어야 한다. ■ 본 조항의 심사의견은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실체가 없는 대상의 발명 출원 또는 BM(Business Model)특허 출원에서 많이 보게 된다. 명세서에 상기 1)~3)이 전부 기재되었다면 종래기술과의 대비로부터 존재하는 기술문제를 해결하였음을 입증하고, 발명의 설명부분으로부터 창조적인 기술수단을 도출하여 청구항에 보정한 후, 보정이 자연법칙에 부합되는 유익한 기술효과를 가져왔음을 진술하여 심사의견에 대응할 수 있다.

특허법 제 19 조 제 1 항의 비밀심사규정을 위배한 거절 (개정전 20 조 1 항)

제 19 조 1 항에서는 비밀심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출원하기 전에 CNIPA 비밀심사를 받아야 한다. 본 조항을 어기고 외국에 선출원한 경우, 중국에 후출원시 거절이 된다.

■ 본 조항에 대한 심사는 초보심사단계, 실질심사단계에서 모두 진행한다.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인지에 대한 판단은 주로 발명인 중에 중국인이 있고 발명의 실질적인 특징의 창조적인 공헌이 중국인 발명인에 의해 완성되었으면 중국 역내에서 완성한 발명으로 판단한다.

글로벌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전세계적으로 특허출원을 계획할 시 중국에서 최초로 출원을 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중국 역내에서 완성된 발명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비밀심사청구를 해야 한다.



특허법 제 20 조 제 1 항 성실신용원칙 위반에 의한 거절 (개정 추가 조항)

특허법 제 20 조 제 1 항에서는 특허 출원 및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지켜야 하고,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 이익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본 조항은 성실신용의 원칙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서의 의견수렴버전에 의하면 본 조항에서 말하는 제 2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상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 . 동시/선후 제출된 내용이 같거나, 여러 건의 특징/요소 재조합으로 된 다수 출원
- . 내용/실험수치/기술효과를 위조/변조/조작하거나 간단 대체/ 표절/교묘하게 짜깁기 하는 경우
- . 출원인/발명인이 실제 연구능력 및 연구자원조건에 명확하게 부합되지 않는 경우

특허법 제 22 조 신규성, 진보성, 실용성 결핍에 의한 거절

본 장의 앞부분에서 설명했 듯이 특허권 부여의 핵심적인 실질적 요건은 신규성, 진보성, 실용성(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다. 특허법 제 22 조에서는 해당 요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실질심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심사가 본 조항의 신규성, 진보성에 대한 심사이다.

신규성 구비여부 심사시 종래기술 및 저촉출원과 비교하여 동일한 발명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그 비교는 각 권리청구항과 종래기술 또는 각 저촉출원을 단독으로 비교함으로써 판단이 되는 것이다.

진보성 구비여부 심사시 특출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의 구비여부는 종래기술간 결합과의 비교를 통해 판단할 수 있으며 기술방안 자체,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 및 유익한 효과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한다.



실용성 구비여부 심사시 산업적으로 제조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판단한다.

■ 본 조항의 심사의견 대응은 심사관과의 단순한 쟁변을 통해 극복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권리청구항의 보정을 동반하게 되며 그 보정방법은 본 가이드의 하기에 기록할 예정이다.

특허법 제 26 조 제 3 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설명 공개 불충분에 의한 거절

본 조항은 명세서상 발명의 설명이 응당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발명의 설명은 명세서 작성시 그 내용이 거의 확정되고 권리청구항과 달리 보정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거의 없으므로 최초의 작성부터 본 조항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 본 조항의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발명의 설명부분의 기재와 첨부도면을 결합하여 발명의 실현과정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공개 불충분이 아님을 쟁변할 수 있다. 그외, 진보성의 흠결을 유도하지 않는 전제하에 심사의견이 지적하는 상세한 진술이 결핍된 부분 및 기술내용에 대해서는 당업자의 공지상식, 종래 기술 등으로 쟁변할 수 있다.

특허법 제 26 조 제 4 항을 어긋난 거절

본 조항은 신규성, 진보성 결핍사유 외 심사의견에서 가장 흔한 거절사유이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청구항의 명확함과 간결함은 명세서 작성시에 잘 진술이 되어야 하고 해당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초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재진술하여 보정해야 한다.



본 조항에서 규정하는 청구항이 발명의 설명부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없는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청구항 작성시 한정하는 기술방안의 보호범위가 발명의 설명을 근거할 수 있도록 실시예 뿐 만 아니라 전반 발명의 설명부분의 기재를 살펴야 하며 청구항이 해결할 수 있는 기술문제에 입각하여 명세서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도록 작성 및 보정해야 하고 하기와 같은 기재를 주의해야 한다.

- . 명세서상 실시예의 수량은 권리청구항의 기술방안의 개괄정도에 따름. 통상의 원칙은 권리청구항의 기술방안의 범위내에서의 해당 발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거나 원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함.
- . 통상의 기술자가 명세서의 공개내역으로부터 청구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방안을 얻을 수 있거나 예견할 수 있을 경우에만 명세서의 뒷받침을 받는다고 인정함.
- . 청구항상의 기술방안이 명세서에도 똑같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명세서의 뒷받침을 받는 것이 아님.
- . 최초 제출한 청구항에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방안을 기재하였고 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명세서에 해당내역을 보정하여 추가가능함.

특허법 제 26 조 제 5 항의 유전자원 출처 비등기로 인한 거절

제 2 장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완성된 발명에 있어 유전자원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본 조항에 대한 심사시 명세서의 기술내용을 검토했다는 전제하에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판단 하므로 유전자원을 바탕으로 완성한 발명에 대해 심사관은 등기표 제출여부를 확인한다. 등기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심사의견을 발급하며 보충 통지를 한다.

심사의견 답변시 모든 유전자원의 출처가 공시되도록 빠진 유전자원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보충해야 하고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허법 제 31 조 제 1 항에서 규정하는 단일성 결핍으로 인한 거절

출원에 두개 이상의 관련 없는 발명을 포함한 경우, 단일성 결핍의 심사의견이 발급된다. 심사의견에 대해 답변하지 않거나, 심사의견의 대응에 있어 단일성 결핍 흠결을 극복하지 못할 시 거절이 될 수 있다. PCT 를 통한 국내단계 진입건은 단일성 결핍의 심사의견 통지에 따라 2 개월내에 단일성 회복비용도 납부해야 한다.

단일성 흠결의 치유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대응방법은 분할출원이다. 출원인의 전략에 따라 분할출원을 할 수 있으나, 타국과 달리 모출원의 권리가 확정되었을 시 (거절 또는 등록 등) 분할출원에 대해  재차 분할을 할 수 없다.

단일성 흠결의 심사의견에 대해 보정의 방식으로 대응할 시, 독립청구항은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부여요건이 확인된 동일 기술특징을 보유하도록 보정할 수 있고, 종속청구항은 독립청구항에 대한 인용을 통일화할 수 있다. 그외, 단일성의 하자가 있는 청구항을 삭제할 수도 있다.

실시세칙 제 20 조 제 2 항에 의한 필요기술특징의 결핍으로 인한 거절

본 조항의 규정에 의하면 독립청구항은 발명의 모든 필요 기술특징을 포함해야 한다. 본 조항과 특허법 26.3 조 및 26.4 조의 규정을 흔히 타국 규정과 유사한 기재불비(記載不備)의 규정 조항으로 보고 있다.

필요 기술특징은 발명의 기술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기술특징이다. 본 조항 역시  청구항의 최초 작성과 관련되고 심사의견에 답변시 우선명세서의 내용을 잘 검토한 후, 심사의견에서 인용한 가장 근접한 종래기술로부터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문제를 재확인함으로써 해당 기술문제



를 해결하는 기술특징과 결합하여 독립청구항의 필요 기술특징의 기재여부를
쟁변 또는 보정할 수 있다.

특허법 제 33 조에서 규정하는 출원의 보정이 최초 범위를 벗어난 거절

본 조항은 자진보정이나 심사의견답변시 명세서에 대한 보정을 진행하면서
그 보정이 최초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났을 시 적용이 된다.

❗ 청구항을 보정할 시 추가 또는 삭제하는 보정은 모두 최초 청구범위를 벗
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명세서에 내용 추가시 직접적이고 의심의 여지가 없
는 사항에 대해서만 최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실시세칙 제 43 조 제 1 항에 의한 분할출원이 원출원의 기재를 벗어난 거절

분할출원의 명세서는 모출원의 기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본 조항의 심사의견을 접수하였을 시 모출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
정하여야 한다. 분할출원에 대한 기타 실질심사는 모출원의 심사와 같다.

답변 코멘트 처리

심사의견에 대한 변리사의 분석과 상기 거절사유에 대한 대응 코멘트 및 구
체적인 보정건의를 접수한 후의 처리결정은 출원인이 지시한다.

거절사유에 대한 대응은 최적화 방안이 있으나 출원인의 전략에 따라 다수
해결방안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변리사의 대응방안이 여러가지 해결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 차 OA 는 4 개월의 답변기한, 그 이후의 OA 는 2 개월의 답변기한이 있



으며, 이런 기한의 준수를 위해 신속한 답변제출이 바람직하다. ■ 상기 답변기한은 2 개월 또는 1 개월 연장이 가능하나 한번만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관납료를 지불해야 하며 답변기한 내에 연장청구를 해야 하므로 기한을 준수하기 위해 출원인은 답변에 대한 처리방식을 빠른 시일내에 지시함이 좋다.

심사의견서 답변

변리사는 출원인의 OA 대응 지시를 받으면 빠른 시일내로 심사의견서 답변 제출을 할 것이나, 출원인의 결정에 새로운 흠결이 있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을 시 추가 확인을 요청할 것이다.

답변의견진술외 명세서 보정이 필요할 시 출원인의 지시에 따라 명세서 보정을 진행하고 보정이유를 진술하며 참조용지 등 필요서류를 준비한 후 답변 제출한다.

■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절차로, 제 1 차 OA 답변기한 만료 전 답변을 하지 않고 자진취하 할 경우 50%의 실제심사청구 관납비용을 반납 받을 수 있다.

명세서 보정

특허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명세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명세서를 보정할 수 있다. 허용이 되지 않는 보정은 아래와 같다.

- 1) 청구범위의 기술특징을 자발적으로 삭제하여 그 청구범위를 확대한 경우
- 2) 청구범위의 기술특징을 자발적으로 변경해 그 청구범위가 확대되는 경우
- 3) 최초 보호를 받고자 하는 주제를 단일성이 결여된 최초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기술내용으로 자발적으로 보정을 한 후 청구항의 주제로 한 경우



4) 새로운 독립항을 자발적으로 추가하나 그 독립항이 한정하는 기술방안이 최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

5) 새로운 종속항을 자발적으로 추가하나 그 종속항이 한정하는 기술방안이 최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이다.

청구범위의 주요보정 방식은 1) 독립항의 기술특징을 증가 또는 변경하거나, 2) 독립항의 주제유형 또는 주제명칭 및 상응하는 기술특징을 변경하여 보호 받고자 하는 독립항의 범위를 바꾸거나, 3) 청구항을 증가 또는 삭제하거나, 4)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에 대하여 재한정하기 위하여 독립항을 보정하거나, 5) 종속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기 위하여 종속항의 인용부분을 보정하거나 그 인용관계를 바꾸거나 5) 또는 종속항의 한정부분을 보정하는 것 등이 있다. 물론 상기 보정 중의 기술방안이 이미 명확하게 최초 발명의 설명과 청구범위에 기재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 4 장 중국 특허 출원의 등록

특허증 발급

실질심사를 거쳐 거절사유를 전부 극복하였고 흠결치유 후 기타 결함이 없을 시,  특허권부여통지서 및 등록절차처리통지서를 발급 받게 된다.

등록절차처리통지서에는 등록 당해의 연차료 및 특허증 인지세 납부 마감일이 기재되어 있고 해당 마감일 전에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마감일 전 관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시 특허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마감일 전 연차료와 특허증 인지세를 납부하였을 시, 특허증을 발급 받게 된다. 전산화로 인해 2020 년 2 월부터 CNIPA 에서는 서면특허증을 발급하지 않으며 모든  특허증은 전자버전으로 발급이 된다.  특허증은 재발급이 불가하여 특허증 보관에 각별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특허증을 접수한 후 기재정보의 정확성 여부를 잘 확인함이 바람직하다. 만일 잘못 된 정보가 있을 시 바로 정정발급을 요청하면 새로운 특허증이 발급이 되고 제때에 진행하지 않으면 사후 정정은 힘들다.

타국과 달리, 특허권부여통지서 또는 등록절차처리통지서 또는 특허증에는 특허등록공보 즉 최종 등록된 명세서가 첨부되지 않는다. 등록된 최종 권리보호범위에 대한 확인 필요시 사전에 특허사무소에 특허등록공보 원문의 전달을 지시할 수 있다.

분할출원 제출

특허권부여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 개월내 여전히 분할출원 신청이 가능하



다. 단 분할출원이 가능한 기한은 특허권이 확정되기 전까지, 즉 특허권을 부여받거나 특허등록 거절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실무상으로 당해 연차료 및 인지세를 납부하기 전에 분할출원을 진행함이 좋다.

존속기간 연장

특허법 제 4 차 개정에 신규 추가 된 특허 존속기간 연장 제도에 근거하여 심사로 인한 특허등록의 불합리한 지연 및 의약품 출시를 위한 허가승인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지연에 대해 보상한다.

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 년 또는 실체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 년 뒤에 특허권을 부여받은 경우,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한 비합리적인 지연에 대해 특허권 기한을 보상한다. 단 출원인에 기인한 비합리적인 지연은 제외한다.

신약 출시 심사 비준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에서 출시 허가를 받은 신약 관련 특허에 대해,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해 특허권 기한을 보상한다. 보상 기간은 5 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 출시 후 유효 특허권 기한은 14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특허법 개정후 시행 관련 문제에 관한 해답>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피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보상은 특허법 제 4 차 개정의 효력발생일인 2021 년 6 월 1 일이후 출시 허가를 받은 신약에만 적용된다.

 현재 존속기간 보상에 대한 청구신청은 가능한 상황이나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서의 개정작업 완료전이라 CNIPA 는 개정 규정에 따라 심사를 정하고, 그에 따른 관납비 및 필요서류도 결정하여 심사할 것이다. 현 과도단계에서는 존속기간 보상 청구는 2021 년 6 월 1 일부터 등록공고된 특허에 대해 특



허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서면 형태로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차료 관리

특허증 획득이후 특허권의 유지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특허권 유지시 매년 연차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 경과시 특허권은 만료된다. 연차료에 대한 납부 모니터링은 관리 대행을 위임할 수 있다.

■ 등록절차처리통지서접수시 연차료를 지급한 후, 빠른 시일내 또 다음해 연차료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등록절차처리통지서에 의한 연차료 납부는 특허권 부여 당해, 즉 끝나가는 해의 연차료에 대한 지불이고, 바로 또 지불해야 하는 연차료는 곧 다가오는 해의 연차료에 대한 지급이기 때문이다.

연차료의 납부는 임의의 개인, 기업, 조직에서 대행이 가능하므로 중복납부에 주의해야 한다.

연차료 납부마감일 후 6개월 내에 과태료 지급 후 연차료 납부 보완을 할 수 있으나 상기 기한까지도 경과하면 특허권은 종료가 된다. 특허권 종료시 종료통지서를 발급받게 되고 2개월내에 회복이 가능하나 해당 2개월의 마감일도 놓칠 경우 특허권은 소멸된다.



등록원부 발급

중국에서는 특허증이 한번만 발급이 되고 양도 등 특허권리의 변경이 있더라도 재발급이 불가하다. 특허정보의 변경은 등록원부에 기재가 되므로 특허권리행사를 하거나 특허증의 작용을 하는 증서 필요시 등록원부의 부분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등록원부의 부분은 특허의 출원인에 한해서만 발급이 되며 청구시 출원인의 신분증명서류가 요구된다.

홍콩 및 마카오 출원

중국 본토 출원의 공개후 6개월 내에 홍콩에서 출원등기를 진행한 것은 중국 본토 출원 등록공보후 6개월 내 홍콩에서의 등록등기를 마감해 홍콩의 표준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 최근 홍콩의 실질심사 작업능력의 강화로 인해 홍콩에서 직접 특허출원을 청구하고 홍콩 특허청의 실질심사를 거쳐 등록을 받을 수도 있다. 단, 중국 본토의 특허출원을 통한 홍콩의 연장출원 진행시 실질심사를 두번 거치지 않고 비용절감도 할 수 있다.

중국 본토 출원의 등록공보 후 3개월내 특허등록원부 부분 및 명세서 부분을 제출하여 마카오에서도 특허연장출원을 할수 있다. 마카오에서도 직접적으로 특허출원은 가능하다. ■ 단, 2021년 8월부터 연장출원이 아닌 마카오에서의 직접적인 특허출원은 출원인이 발명인 본인이 아닌 경우 또는 유일한 발명인이 아닌 경우 어떤 방식으로 발명인으로부터 특허출원권리를 획득하였는지 밝혀야 한다. 1) 상속, 2) 노동계약, 3) 양도, 4) 출원인 위탁 발명 등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제 5 장 중국 특허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무효심판

거절결정불복심판

실질심사단계에서 최종 거절결정서를 전달받을 시, 변리사는 그 거절결정서를 분석하여 거절이 된 구체적인 사유 및 대응방안을 전달한다. 특허출원인은 해당 방안에 근거하여 거절결정에 대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할지 판단하고 지시한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전반적인 절차는 하기  그림 2 와 같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접수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청구의 객체가 정확하고, 청구 주체의 자격이 구비되고, 규정기간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관납비를 납부하고, 청구서류의 방식이 요구사항에 부합될 시 접수 된다. 구체적인 접수요건은 표 5 를 참고한다.

표 5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접수요건

구분	요구사항	처리
객체	거절결정이어야 함	객체대상이 거절결정이 아닐 시 불수리
청구인	거절 건의 출원인 전체 출원인	전체 출원인이 아닐 경우 보정 보정 불가시 청구 미제출로 간주
기간	거절결정서 접수 3 개월내	기간 초과시 불수리, 기간 연장 불가
서류	- 청구서 - 청구이유 - 명세서 - 위임장	- 서면 청구시 2 부 제출 - 보정시 보정서 동봉 - 불복심판에 대한 위임권한 명기
비용	통지기간내 납부	미제출로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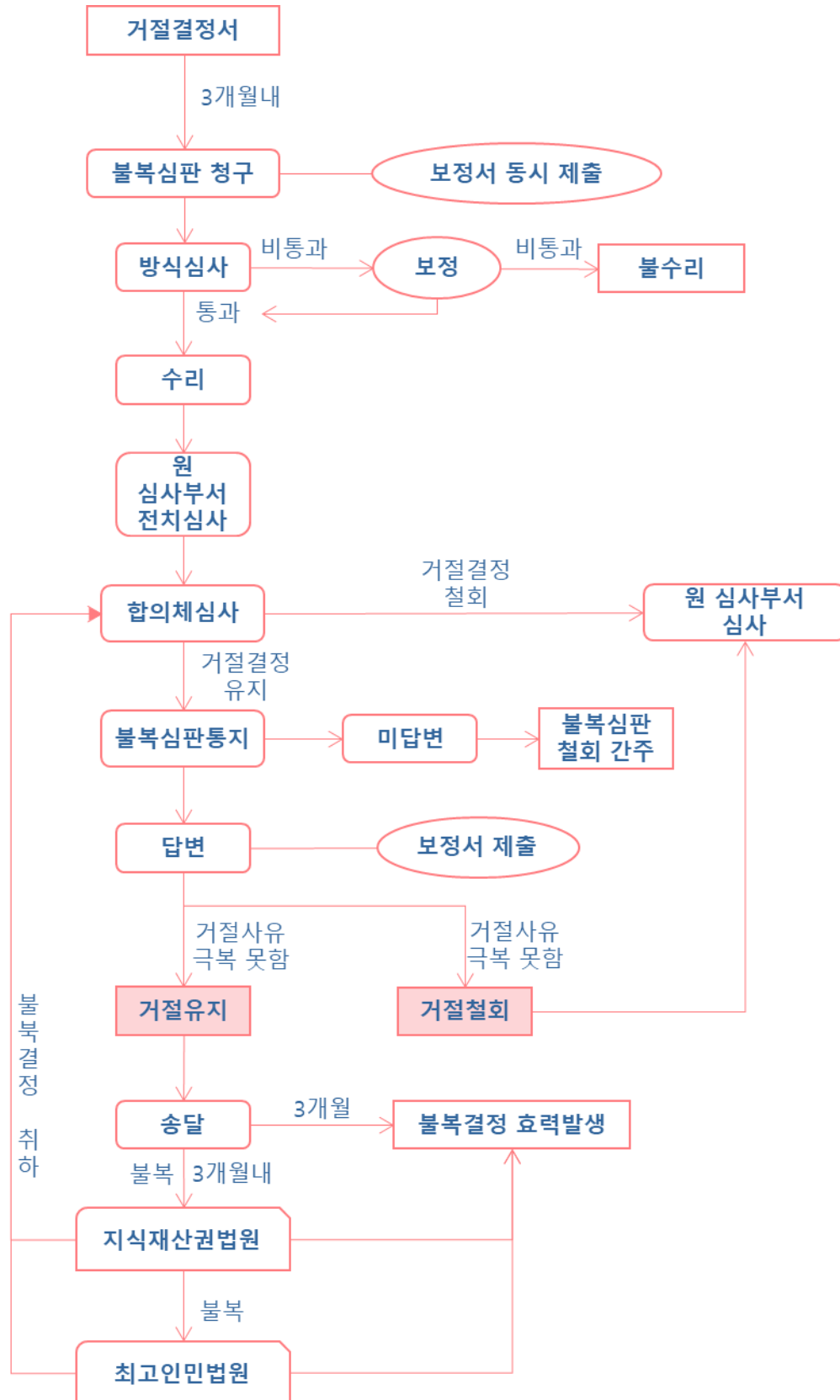


그림 2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 흐름도



방식심사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방식심사를 거쳐 특허법 및 그 실시세칙 및 심사지침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수리통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다.

전치심사(前置審査)

CNIPA는 방식심사에 합격한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서류를 원 출원 서류와 함께 거절결정을 한 원 심사부서에 이송하여 전치심사를 한다. 원 심사부서에서는 전치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치심사의견을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전치심사는  1개월 내에 완성된다.

전치심사의 심사의견은

-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가 성립되어, 거절결정의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
-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이 제출한 출원서류의 보정서류가 출원 중에 존재하던 흠결을 극복하여, 보정서류를 기초로 하여 거절결정의 취소에 동의하는 경우,
- 3)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이 진술한 의견 및 제출한 출원서류의 보정서류가 거절결정을 취소하기에는 불충분하여,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3가지가 있다.

상기 1) 또는 2)의 경우에는 더 이상 불복심판의 합의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치심사의견에 따라 불복심판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원 심사부서는 실질심사를 계속 진행한다.



합의심사

전치심사 중 본래의 심사부서에서 거절결정을 유지할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통지서를 받게 되고 불복심판은 합의체의 합의심사단계에 진입하게 된다.

합의체는 일반적으로 거절결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 및 증거에 대해서만 심사한다. 단, 거절결정서에서의 거절사유 및 증거 외에도 기타 거절 흠결이 존재할 시 함께 심사한다.

거절결정 및 전치심사의 심사의견을 극복하기 위해 대부분은 명세서에 대해 재차 보정을 하게 되나 불복심판단계에서의  명세서 보정은 하기와 같은 제한이 있다.

- 1) 보정 후의 명세서의 기재가 출원시의 최초 명세서의 기재범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 2) 보정 후의 권리청구범위가 거절결정시의 권리청구범위에 대비하여 확대되어서는 안된다.
- 3) 거절결정에서 지적한 권리청구범위가 한정하는 기술방안을 단일성이 결핍한 기술방안으로 보정해서는 안된다.
- 4) 권리청구범위의 유형을 변경하거나 청구항을 증가해서는 안된다.
- 5) 거절결정에서 지적한 흠결과 관련이 없는 권리청구범위 또는 발명의 설명에 대한 보정은 거절결정에서의 흠결과 동일한 성질의 흠결인 경우를 제외하고 안된다.



불복심판결정 결과

합의심사를 거친 거절결정불복심판은 불복심판 결정서를 발급하게 되고 3가지 결과의 결정이 있다.

- 1)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의 불성립, 거절유지결정
-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의 성립, 거절취소결정
- 3) 특허출원서류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인의 보정을 거쳐 거절결정에서 지적한 흠결이 극복되어 보정서류를 기초로 한 거절취소결정

■ 원 심사부서의 거절결정을 취소한 경우, 본래의 심사부서에 이송 후 계속 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사실, 이유 및 증거로 거절할 수 없다.

불복심판 종료

불복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특허 출원인은 ■ 3개월내에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절차는 하기 제 6 장을 참고할 수 있다.

불복심판 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이 효력을 발생할 시 거절결정불복심판 절차는 종료가 된다.

무효심판

특허법 제 45 조에서는 특허권 부여 공고일로부터 임의의 개인 및 조직은 해당 특허권의 부여가 특허법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인정할 시 해당 특허권에 대



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케팅 전략에 의해 경쟁사의 특허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 침해분쟁의 항변 대응으로 무효가 많이 청구된다.

무효심판의 전반 절차는 하기 그림 3 과 같다.

청구인 자격

특허법상에서는 임의의 개인이나 조직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청구인의 자격은 하기와 같은 제한이 있다.

1) 민사소송의 주체적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즉 개인의 신분, 조직의 증명 등이 요구된다. 아닐 경우 무효 청구는 불수리된다.

2) 디자인에 대한 무효 청구인 제한 (생략)

3) 공동 특허권자의 경우, 일부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에 대해 전부 무효를 제출할 시 무효 청구는 불수리 된다.

4) 특허권자가 전부 무효 청구를 제출하였으나 무효증거가 공개물이 아닐 경우, 무효 청구는 불수리 된다.

5) 다수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동일한 한개 건의 특허에 대해 무효 청구를 한 경우 불수리 된다.

6) 중국역내에 상주지가 없는 해외 청구인이 중국 특허사무소에 위임을 하지 않고 무효 청구시 불수리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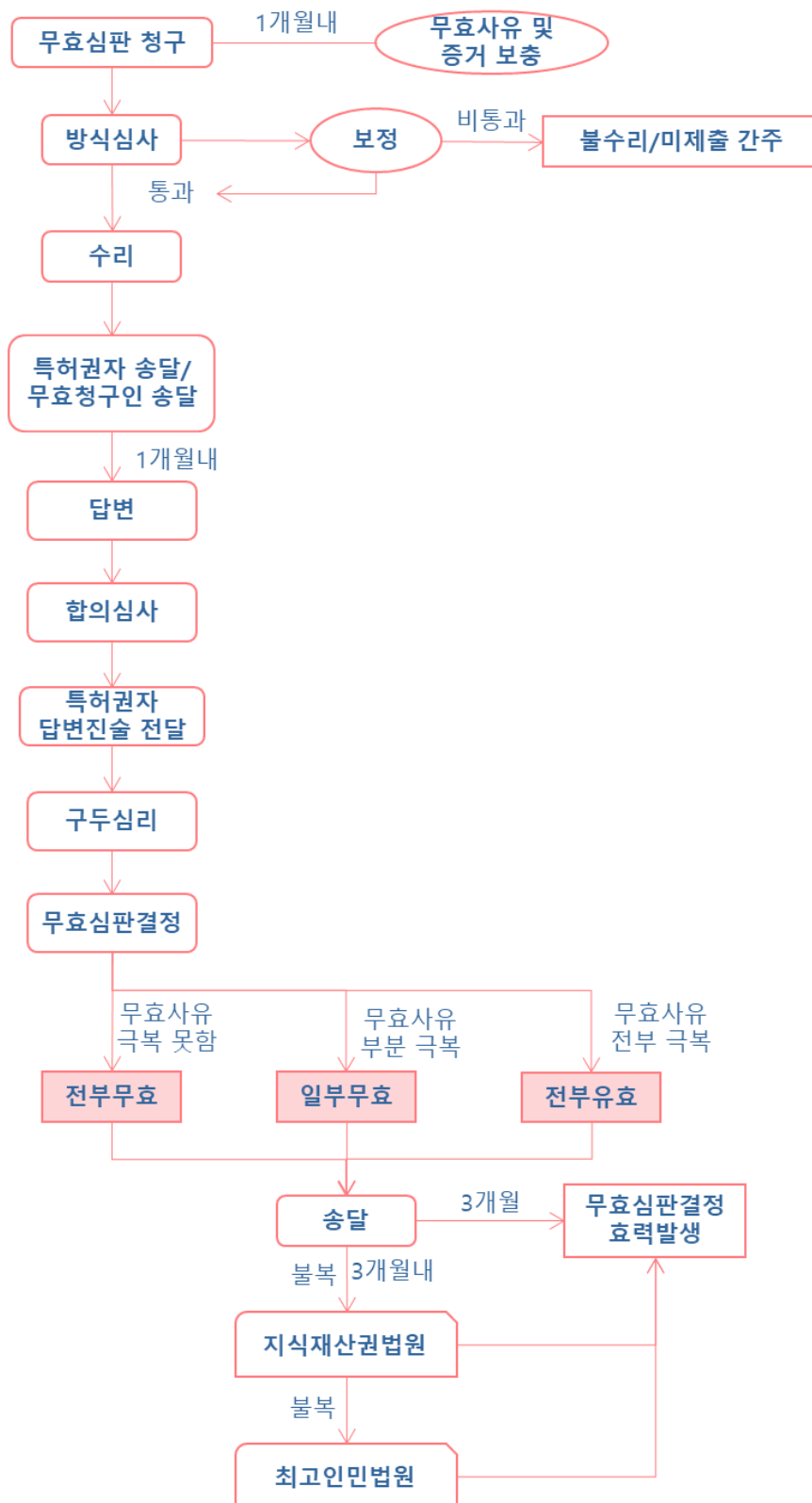


그림 3 무효심판 절차 흐름도



청구서류

해외청구인의 경우, 무효 청구시 제출하게 되는 서류로는 ■ 무효청구서, 무효의견진술서, 무효증거, 위임장 등이다.

심사지침서의 의견수렴버전에 의하면 특허권 권리 분쟁건의 당사자가 무효 청구시, 해당 분쟁건의 법원 입안증명 또는 지식재산권국의 행정결재 입안(제 6 장 참조) 증명을 **무효 청구서**에 동봉해야 한다.

무효 청구서상의 무효청구의 범위가 명확해야 하며 명확하지 않을 경우 보정통지에 따라 보정해야 한다.

무효청구의 **무효사유**는 실시세칙 제 65 조 제 2 항에서 규정하는 표 6 의 사유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무효사유는 실질심사중의 거절사유와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단일성 등은 무효사유가 아니며 ■ 거절사유와 무효사유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무효사유 규정에 대해서는 제 3 장 거절사유의 분석부분을 참조할 수 있다.

표 6 무효사유 및 대응 법적 조항

무효사유	대응 조항
특허의 정의에 위배	특허법 제 2 조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발명창조	특허법 제 5 조
동일한 발명	특허법 제 9 조
비밀심사 규정에 위배	특허법 제 19.1 조 (개정전 20.1 조)
성실신용 원칙에 위배	특허법 제 20.1 조 (개정 신설 조항)
신규성, 진보성, 실용성 결핍	특허법 제 22 조
디자인의 특허성 요건 결핍	특허법 제 23 조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객체	특허법 제 25 조



발명의 설명 공개 불충분	특허법 제 26.3 조
청구항이 발명 설명의 뒷받침을 받지 못함	특허법 제 26.4 조
디자인 도면의 요구요건 결핍	특허법 제 27.2 조
보정이 최초의 범위를 벗어남	특허법 제 33 조
필요기술특징의 결핍	실시세칙 제 20.2 조
분할출원이 원 출원의 기재를 벗어남	실시세칙 제 43.1 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무효청구의 대상이 되는 특허에 대해 같은 사유 및 증거로 재차 무효청구를 할 시 불수리 한다. 무효를 청구하고자 하는 대상 특허에 대해 기존 무효심판 결정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효의견진술서 작성시 무효사유와 그 법적근거를 기재하고 해당 사유와 관련이 되는 권리청구항은 무효증거와 일일이 비교하면서 상세하고 충분하게 의견진술을 해야 한다. 무효증거상의 사실은 요점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은 법적근거를 적용하여 분석하면서 무효결론을 도출한다.

무효에서 자주 보는 **증거**는 종래기술 특허문헌이다. 기타 종래기술의 출판물 공개, 사용 공개의 증거는 **■** 그 출판일/발생일에 대한 입증이 충분해야 한다. 무효증거가 외국어인 경우 중국어로 번역이 되어야 하며 **■** 부분 번역시 증거에 대한 질의로 채택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 부분 번역 또는 전체 번역 여부에 대해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특허권자의 답변

특허권자는 무효심판청구 수리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답변 여부, 답변 전략 및 명세서 보정방안 등을 확정한다.

답변은 물론 무효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 일일이 쟁변하고 특허권리의 안정



화를 위해 청구범위의 보정을 대부분 동반하게 된다.

무효심판에서는 청구범위에 대한 보정이  보다 제한되어 있다. 2017 년 개정된 심사지침서의 규정에 의해 청구범위 보정의 구체적인 방식은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삭제, 기술방안의 삭제, 청구항의 추가 축소한정, 명확한 오기의 보정으로 한정되며 이런 보정 방식은 하기 규정에 어긋나서는 안된다. 청구항 합병의 청구범위 보정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 1) 원 청구범위의 주제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 2) 특허권을 부여 받은 청구범위와 비교시, 보호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 3) 최초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4) 일반적으로 특허권을 부여 받은 청구범위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술특징을 추가하여서는 안된다.

합의체에서 무효심판 결정을 하기전 특허권자는 청구범위 또는 기술방안을 삭제할 수 있으나 하기 상황에서는 삭제 이외의 방식으로 청구범위를 보정해야 한다.

- (i) 무효심판청구서에 대한 답변기간 내,
- (ii) 청구인이 추가한 무효사유 또는 보충 증거에 대한 답변기간 내,
- (iii) 제출되지 않은 무효사유 또는 증거의 추가에 대한 답변기간 내.

합의심사

무효심판에서 합의체는 청구인이 청구한 무효범위, 사유 및 증거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전면심사를 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무효 청구시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무효사유에 대해 또는 대



응되는 증거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합의체가 허용하는 1 개월의 보충제출 기한내에도 제출이 되지 않을 시에는 합의심사시 그 무효사유 및 증거를 심사하지 않는다.

무효 심판은 합의심사시 대부분 구두심리를 진행한다. 합의체는 구두심리 통지서를 발급해 심리시간, 장소 등 사안을 통지하고 무효청구인과 특허권자는 구두심리 참석확인 답장을 제출한다.  구두심리에서는 심리참석자 신분확인, 심리의 범위 확정, 추가된 무효사유가 있을 시의 증거보충 및 그 답변, 거증(举证) 및 증거에 대한 교차 질문, 양측 당사자의 쟁변, 합의체 합의 등 절차를 포함한다. 통상적으로 구두심리 심판현장에서 무효심판 결정을 발표하는 경우가 적다. 구두심리가 종결된 후 심리참석자는 구두심리의 기록에 대해 확인 서명하고 사후의 무효심판 결정을 기다린다.

결정 결과

무효심판결정 결과는 3 가지가 있다. 특허권 전부 무효, 특허권 일부 무효 또는 특허권 유지이다. 무효가 된 특허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무효심판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3 개월내에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의 절차는 하기 제 6 장을 참고할 수 있다.

무효심판 결정에 대해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법원 무효심판의 결정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 발생 시 무효심판 절차는 종료된다.



제 6 장 중국 특허 침해 분쟁 구제

특허침해행위는 특허권 유효기간 내에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법적근거 없이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타인의 특허를 실시한 행위를 말한다. 특허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특허침해분쟁이다.

중국에서는 특허침해분쟁에 대한 구제방식으로 1) 행정적 조치 및 2) 사법적 조치의 이중방식을 취하고 있다. 특허침해분쟁이 발생했을 시, 분쟁 당사자는 자체로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CNIPA 및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국)에 행정결재를 요청하여 처리하는 행정적 조치를 채택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법적 조치를 채택할 수 있다.

특허 행정결재

특허침해분쟁 구제중 행정적 조치는 특허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에 요청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며 행정결재(行政裁决)로 침해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침해행위에 대해 즉시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CNIPA에서는 행정결재를 총괄 관리하고 전국적인 중대한 분쟁에 대해 관여 할 수 있으며,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국에서는 지역내 분쟁에 대해 관리한다. (이하 CNIPA 및 각 지역의 지식재산권국을 지식재산권국으로 통칭함)

■ 행정결재는 2020 년부터 시범실시 하였고 2021 년 상반기에만 수리된 행정결재건이 1.38 만건에 달하는 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에서의 행정결재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예정이다.



사건 수리

행정결재건의 수리는 청구인의 청구제출에 의거한다. 지식재산권국은 청구의 제출이 요건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심사후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이하 수리요건에 대해 표 7 과 같이 정리한다.

표 7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수리요건

	구분	내용	필요사항
당사자	청구인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	신분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명 외국 청구인인 경우 공증 인증 Licensee 인 경우 관련 계약 등 증명
	피청구인	자연인 기업 조직	명확한 실체 대상이 있어야 함 주소가 있어야 함 기업/조직인 경우, 주체자격정보 소요
제출자료	청구서	청구인 정보 피청구인 정보 청구사항 증거자료 목록 대리인 (있을 시) 특별 청구사항	대리인이 있을 시 위임장
	특허자료	특허증 특허등록공보 법률상태증명 특허권평가보고	특허권평가보고서: CNIPA 에 기한내 제공 요구 가능
	침해증거	물증, 서증 등	수리시 방식심사만 진행 청구 동시 제출 필요 중국 역내 증거 공증에 대한 방식심사 해외증거 반드시 공증



		외국어 증거 반드시 번역 2 부 제출, 목록 작성
수리조건	1) 청구인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 2) 명확한 피청구인 존재 3) 명확한 청구사안, 구체적 사실 및 이유 존재 4) 피청구인 침해행위 혐의 증거 5) 지식재산권국의 수리 및 관할 범위 6) 청구인, 피청구인이 기타 방법으로 분쟁 해결無, 인민법원 기소無	

입안 및 심사

청구인이 모든 자료를 제출완료하면 지식재산권국에서는 입안수리심사를 진행하고 입안의견을 제기하며 <특허침해분쟁사건 입안 심사표>를 작성하여 내부 심사한다. 심사후 입안결정이 되면 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3 명 또는 그 이상의 집행요원이 해당 분쟁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한다. 구체적인 수리 및 심사 절차는 하기 그림 4 와 같다.

표 8 특허침해분쟁 처리청구 수리통지서 양식

专利侵权纠纷处理请求受理通知书	
案号: _____	
专利号	_____
专利名称	_____
专利权人	_____
请求人	_____
被请求人	_____
_____:	
经审查, 请求人于_____年____月____日提交的侵犯专利权纠纷处理请求符合《专利行政执法办法》第十条规定的受理条件, 本局予以立案。	
特此通知。	
_____知识产权局 (盖章)	
_____年____月____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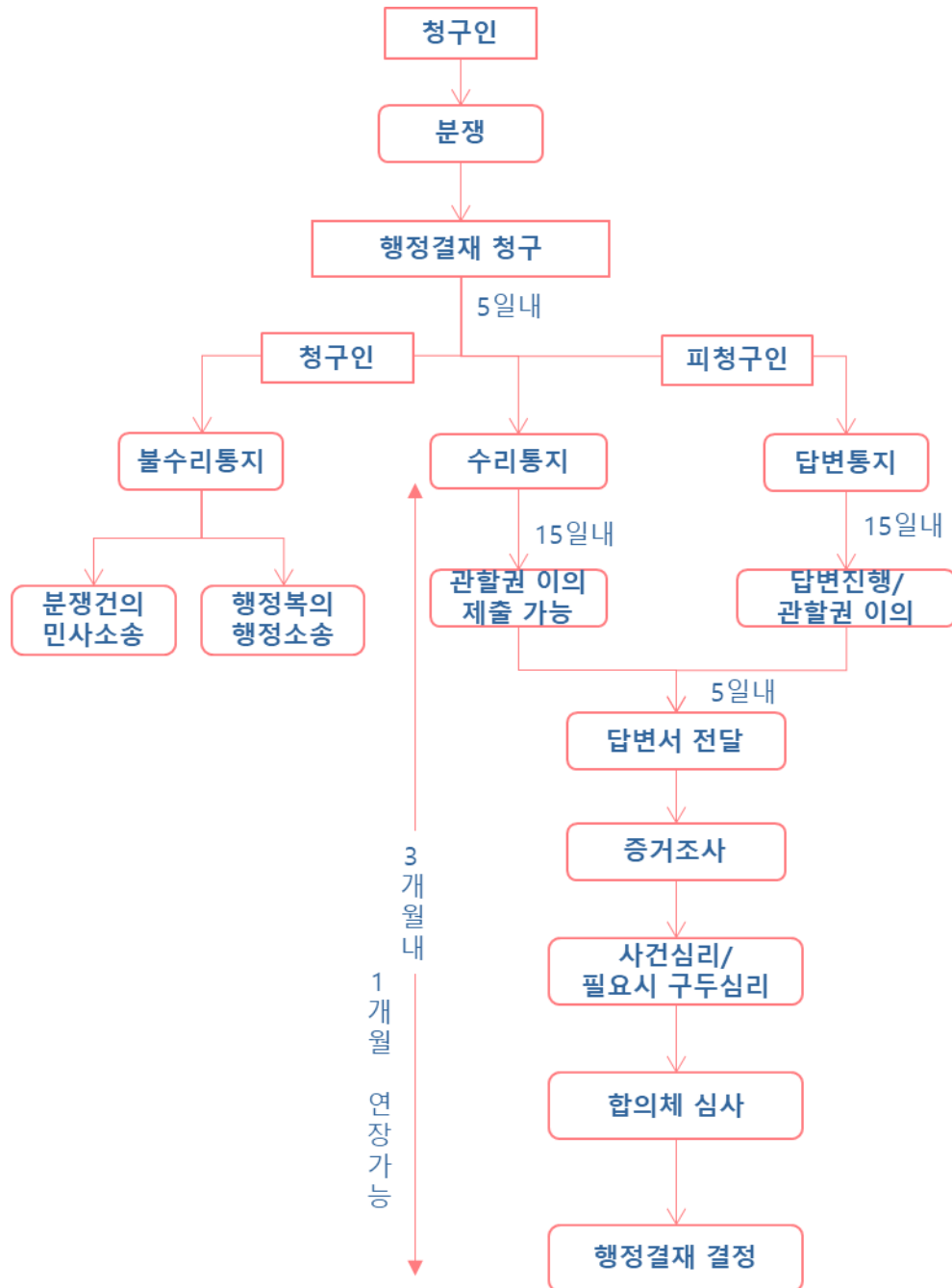


그림 4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재 절차 흐름도

피청구인 답변

사건수리후 답변통지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답변을 진행하지 않아도 지식 재산권국의 처리에 영향이 없다. 단 답변 진행시 정본 및 부분 2 부를 제출한다. 답변시 피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하고 3 일내 보정이



가능하며 서명 날인 누락시 답변 미제출로 간주한다. 피청구인은 신분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답변서와 동봉해야 한다.

대리인 위임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부분 대리인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되는데 위임장은 특별위임과 일반위임의 차이를 잘 구분하여 체결해야 한다. 권리 포기 등 권리결정에 대한 위임은 특별위임을 해야 함을 주의해야 한다. 외국인이 서명 날인한 위임장은 공증 및 인증이 필요하다.

관할권에 대한 이의

행정결재건의 관할권 확정은 소송과 유사하며, 피청구인의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 발생지의 지식재산권국이 관할한다. 당사자가 관할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5 일내로 관할권 이의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의 수용시 관할권이 있는 지식재산권국으로 이송하고 이의 비수용시 당사자는 별도로 행정복의(行政復議)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증거

청구인, 피청구인의 증거는 원본, 표적제품자체(标的产品原件)로 제출이 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침해 입증 증거는 피청구인이 침해행위를 실시한 증거, 침해 제품 및 방법과 관련된 증거 등을 포함한다. 제조방법과 관련된 특허에 대한 침해에 대해서는 제 3 자의 감정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그 피해에 대한 증거도 제출해야 하는바 라이선싱 계약, 침해로 인한 손실액, 침해로 인한 피청구인 이익, 법적 배상의 근거 등 증거가 포함된다.



피청구인이 제출하는 증거는 비침해 주장의 항변증거와 유사하다. 특허권리 흠결에 대한 증거, 특허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 증거, 종래기술 항변 증거, 선사용권 주장 증거, 합법적 출처 증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중국에서 거증의 의무는 주장하는 쪽에 있지만 행정결재시에는 방법발명과 같은 침해제품에서 적용한 방법이 특허의 방법과 다름에 대한 거증의무는 피청구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국은 권한에 따라 또는 청구에 따라 필요시 현장검측, 위탁검증, 등기보전 등 증거수집을 한다.

구두심리

구두심리 필요 시, 구두심리통지서는 구두심리일 3 일전에 송달되도록 보장한다. 구두심리는 합의체 팀장이 조직하며 재판과정과 흡사하다.

합의심사

행정결재건의 심사는 합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합의체는 인정하고자 하는 사실, 증거, 법적책임, 적용법률, 처리결과에 대해 전면적인 합의심사를 진행하여 특허침해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침해여부에 대해 판단한다.

침해여부 판정

침해여부의 판정과정에서는 침해혐의 행위가 특허법 차원에서의 침해행위가 맞는지를 판단하고, 침해혐의 제품 및 방법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도 판단하며 민사소송에서의 침해여부 판정과 유사하다.

침해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침해혐의자가 타인의 특허를 실시한 행위자체



가 있는지, 해당 실시행위가 특허권이 부여된 후 특허권 존속기간내에 발생했는지, 침해혐의자가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았는지, 침해행위가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했는지, 침해행위가 특허법에서 규정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속하는 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진행한다.

침해혐의 제품 및 방법이 특허 보호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해 판단 할 때에는 우선 청구인의 주장에 따라 침해한 특허청구항을 확정하나 확정이 어려울 시 독립청구항 제 1 항을 비교하고자 하는 보호범위로 한다. 침해여부의 비교에서는 청구항의 보호범위의 모든 기술특징을 혐의 제품/방법의 기술특징과 일일이 비교한다. 비교의 원칙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동등원칙, 균등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구체적인 비교방법은 본 장 민사소송편을 참조할 수 있다.

피청구인/침해혐의자의 비침해 항변 및 그 증거제출도 민사소송과 유사하다.

종료

행정결재건의 종료결과는 3 가지가 있을 수 있다.

- 1) 행정결재, <특허침해분쟁사건 행정결재서>발급, 사건종료
- 2) 조정, 당사자간 협의에 따른 <특허침해분쟁 조정협의서>발급, 사건종료
- 3) 철회, <특허침해분쟁사건 철회결정서>발급, 행정처리 종료

행정결재 결과

<특허침해분쟁사건 행정결재서>에는 당사자 기본상황, 사건경과 등 모든 사건의 정보를 기재하고, 가장 핵심적인 결재결과를 기재한다.

결재결과가 침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침해행위를 당장 금지할 것을 명령한다. 침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시, 청구인의 모



든 청구를 거절한다.

결재결과 불복

당사자가 행정결재의 결과에 불복할 시, 결재서 접수일로부터 15 일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복침해행위

침해행위가 성립되는 행정결재후 피청구인이 같은 침해행위를 반복할 시 지식재산권국은 청구에 따라 바로 침해행위 금지의 행정결재를 할 수 있다.

행정결재 집행

행정결재는 결재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나아가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도 행정결재의 집행은 중단하지 않는다. 단, 법에 의해 중단해야 하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의해 중단해야 하거나, 지식재산권국에서 중단의 필요 있다고 인정할 시 적시에 중단한다.

당사자가 행정결재를 자발적으로 집행할 경우, 다른 측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합의체는 2 명의 현장요원을 파견하여 집행감독할 수 있다.

당사자가 행정결재에 불복해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침해행위를 중단하지도 않을 경우, 지식재산권국에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재결과 공개

결재일로부터 20 일 근무일 내로 자동적으로 공개가능한 사건정보에 대해 공고한다.

■ 이상으로 특허침해분쟁의 행정결재는 효율이 높고 비용부담이 적으며 전



문성이 강하고 절차가 간편한 특징이 있고 신속하게 특허침해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단, 행정결재는 침해행위에 대한 중단 등은 가능하지만 배상액에 대한 청구는 제한된다.

특허 소송

특허소송이라 함은 법을 근거로 인민법원에서 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판하고 당사자간의 특허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말한다.

2014 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회의에서는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을 연속적으로 설립하고, 최고인민법원 및 각 지역 인민법원에 지식재산권재판청을 설립하여, 지식재산권법원의 관할범위 등을 명확히 결정하였다. 같은 해 11 월 최초의 지식재산권 전문 인민법원인 베이징지식재산권 법원이 설립된 후 2020 년말까지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재판청,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하이난 자유무역항 지식재산권법원, 각 지역 22 개의 지식재산권재판청으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사법 재판체계가 성립되었다.

지식재산권법원은 관할구역내의 1 심사건을 심리하며 그 심리범위는 1) 특허, 식물신품종, 직접회로 배치설계, 기술비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민사 및 행정사건; 2) 국무원 부서 또는 현급 이상의 지방정부의 저작권, 상표, 부정당경쟁 등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 3) 저명상표 인정 관련 민사사건이 포함된다. 그 중,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은 1) 국무원 특허행정부서(CNIPA 에 대응)의 특허, 상표, 식물신품종, 직접회로 배치설계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 부여, 권리 확인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건, 2) 국무원 특허행정부서(CNIPA 에 대응)



의 특허, 상표,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강제허가 결정 및 강제허가 사용료 또는 보수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건, 3) 국무원 특허행정부서(CNIPA에 대응)의 지식재산권의 권리 부여, 권리획득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건의 1심에 대해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 지식재산권재판청에서 특허, 기술노하우, 식물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 전문성이 강한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또는 행정사건 제 1 심에 대한 상고사건 즉 2 심에 대해 심리한다.

특허소송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0 년 중국 각 지역에서 수리한 특허민사소송 1 심건은 28,528 건, 동기대비 28% 증가; 특허행정소송 1 심건은 18,464 건, 동기대비 14% 증가하였다. 지식재산권 형사 1 심건은 5,544 건이나, 대부분이 상표, 저작권 관련 사건이다.

특허법 제 68 조에 의하면 특허 모조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고, 제 78 조에 의하면 위법으로 해외에 특허출원을 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이 따를 것이며, 제 80 조에 의하면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요원 및 기타 국가기관 요원이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적부정으로 범죄를 구성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통계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중국의 특허 형사소송 사건은 그닥 많지 않으며 본 장에서는 주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행정소송

특허행정소송을 처리하는 법적근거는 특허법, 행정소송법 및 이에 상응하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다. 우리가 말하는 특허행정소송은 CNIPA 를 피고로 하는 불복심판결정 및 무효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위주이다. 불복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특허 권리 부여 행정소송이라 하고, 무효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특허 권리 확인 행정소송이라 한다. 그 외, CNIPA 의 직접회로 등기 불복결정 및 철회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CNIPA 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복의 (行政复议) 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CNIPA 의 강제실시결정 또는 강제허가의 사용료 실시 결정 등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각 지역 지식재산권국의 특허모조행위에 대한 처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각 지역 지식재산권국의 행정결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세관의 특허침해사건처리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등이 있다.

불복심판결정 및 무효심판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이하 행정소송)은 불복심판결정서 및 무효심판결정서를 접수한 후 3 개월내에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만 제기 가능하며 기간초과시 연장이 불가하고 해당 구제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외 원고가 소 제기시에는 위임장의 공증 인증이 필수이므로 소 마감일을 각별히 유의하면서 서류의 준비를 최대한 재촉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변리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나 특허의 경우에는 기술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므로 관련 기술영역의 변리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행정소송은 불복심판과정 및 무효심판과정이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는지, 행정결정이 사실을 인정하고 법률을 적용함에 흠결이 있는 지를 재판하므로



출원실질심사과정, 불복심판과정, 무효심판과정의 모든 서류 및 그 쟁변점을 다시 검토하게 되며 특허권을 획득 또는 유지할 수 있는 최종 구제가 된다.

기소입안

행정소송 입안에 필요한 자료 및 요건은 하기 표 9 를 참조한다. 소 제기 예비등기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하기 입안 요건 중 기소기한, 기소서, 행정결정 원본, 당사자 자격 등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면 적어도 ▶ 예비입안은 가능하고 해외 당사자에게 필수요건인 공증 인증자료 등은 예비입안에서 요구하는 최대 ▶ 3 개월의 기한내에 보충할 수 있다. 단, 보충기간을 놓칠 시 입안은 실패한다.

표 9 특허 행정소송 입안 요건

구분	요구	처리
기소기한	행정결정접수후 3 개월내	불복심판결정/무효심판결정의 접수일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발급일 + 15 일 + 3 개월로 계산, 기한 초과시 불수리
당사자	불복심판 행정소송: 원고 출원인, 피고 CNIPA 무효심판 행정소송: 원고 무효청구인(또는 특허권자), 피고 CNIPA, 제 3 자 특허권자 (또는 무효청구인)	
기소서류 (정본, 부분 2 부)	기소서	사인, 날인 청구사유는 행정결정에 한함
	행정결정 원본	불복심판결정/무효심판 결정 원본 필수
	원고 신분서류	개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위임장	최소 위임권한은 일반위임 변호사 또는 소송변리사에게 모두 위임 가능
	공증 인증서류	해외 원고의 경우, 행정결정 원본외 변호사 공 증+대사관 인증 필수



	번역본	외국어가 일부라도 포함된 서류(공증 인증 서류 포함)는 법원 지정 번역기관의 번역 필수
관납료	100CNY	납부통지기간내 교납

심리재판

행정소송은 행정결정의 합법성에 대해 재판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민사소송과 유사한 바 본 장의 민사소송편을 참조할 수 있다.

알아둘 필요가 있는 규정

행정소송의 재판과정 중 구체적 사건에서의 기술용어에 대한 이해는 최고인민법원 사법해석상의 규정과 심사지침서상의 규정이 본질적으로 다르지는 않으나 차이가 있다. 민사침해소송으로 인해 무효청구를 한 행정소송에서는 기술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침해소송 재판에서의 기술해석을 참조하기도 한다.

행정소송의 재판결과는 행정결정의 합리성여부에 대한 심리결과로 행정결정의 철회여부, 유지여부 등으로 재판하며 행정결정이 비합리적이라도 직접적으로 신규성/진보성을 구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로 재판하지 않는다.

민사소송

특허민사소송에서 특허권침해소송이 가장 많다. 그 외, 특허권 비침해 확정소, 특허출원권/특허권 소유 분쟁소, 발명인/설계인 서명권 분쟁소, 직무발명 보수 분쟁소, 특허출원권/특허권 양도계약 분쟁소, 특허라이선싱 계약 분쟁소, 타인의 특허를 가침하는 분쟁소, 특허 임시보호기간내의 사용료 분쟁소, 특허대리계약 분쟁소 등이 있다. 이하 원고의 입장에서 특



허권침해소송의 1 심에 대해 요약해 가이드하도록 한다.

기소입안

특허 침해 소에 있어, 기소의 요건은

- 1) 원고가 분쟁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자연인, 기업 조직이어야 하고;
- 2) 명확한 피고가 있어야 하며;
- 3) 구체적인 소송청구사유 사실이 있어야 하고;
- 4) 법원의 수리범위의 건이어야 한다.

상기 규정에 의한 민사소송에서의 소 제출 필요자료 및 그 구비요건은 민사소송의 청구사유에 따라 상이하게 된다. 해외 원고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입안 요건은 하기 표 10 와 같다.

표 10 특허침해 민사소송 최소 입안요건

구분	서류 및 요건
원고	해외 원고의 경우, 공증 인증된 원고 존속증명/사업자등록증 또는 신분증/수권증명 등, 공증 인증 원본에 대한 중국 법원 지정 번역기관의 번역본
대리인	최소 위임권한은 일반위임, 변호사 또는 민사소송변리사에게 모두 위임 가능, 공증/인증 필요, 지정 번역기관의 번역 필요
피고	중국 기업의 사업자등록증명은 공상등기 기록본
청구사유	민사기소서,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한 소 제기시 CNIPA 의 특허권평가보고서
기소법원	피고 소재지 또는 침해행위발생지의 중급 인민법원, 베이징/상하이/광주는 IP 법원

민사침해소송은 📅 소송시효 3 년내에 소 제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기한이 행정소송에 비해 보다 여유가 있어 최소한의 기소자료가 완비되어야 기소 입안



수리가 된다.

외국 원고인 경우에는 원고의 자격증명 및 그 대리인의 신분서류는 전부 공증 인증된 원본과 중국어로 된 번역본을 요구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대리인과 일일이 확인함이 좋다. 원고가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라이선싱계약서 또는 특허권리의 합법적 상속에 대한 증명도 공증 인증을 해야 한다.

대리인은 변호사로 위임할 수 있으나 특허의 기술 관련성으로 인해 특허변리사에게도 소송 위임을 고민할 수 있다. 단, 특허침해 민사소송의 위임은 민사소송대리인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변리사에 한한다. 위임장에 대한 요건은 상술한 표 10 을 참조바라며 위임권한은 기소자격을 보유한 일반대리와 특허권리를 결정할 수 있는 특별대리를 구별해야 한다.

피고는 수리법원의 관할 구비 여부와 관련이 된다. 피고소재지 또는 침해행위발생지가 수리법원의 소재지여야 하나 피고소재지를 기피하고자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침해행위발생지를 입증하고 피고가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침해행위 발생지에서의 침해제품 구매과정을 공증하는 등 증거를 기소 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 관할 법원의 확정을 위해 실질적인 피고 외 침해행위 발생지와 관련이 있는 공동피고를 추가할 수도 있다.

청구사유가 되는 민사 사건의 원인(案由)은 최고인민법원 2020 년의 개정 규정에 부합되어야 하고 청구내용은 침해행위의 중단을 원하는지 배상을 원하는지 등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한 배상금의 액수에 따라 퍼센트로 기소입안시에 소송수리 관납료를 수취하므로 큰 금액의 관납료를 바로 지불해야 되는 부담이 생길수 있어 기소 청구사유를 잘 고민해야 하고 일단 배상금액을 소규모로 청구한 후 사후 변경할 수



있다.

민사소송은 일반적으로 기소 및 수리, 재판전 준비, 재판, 판결/재정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특허침해 민사소송의 기본 절차는 하기 그림 5 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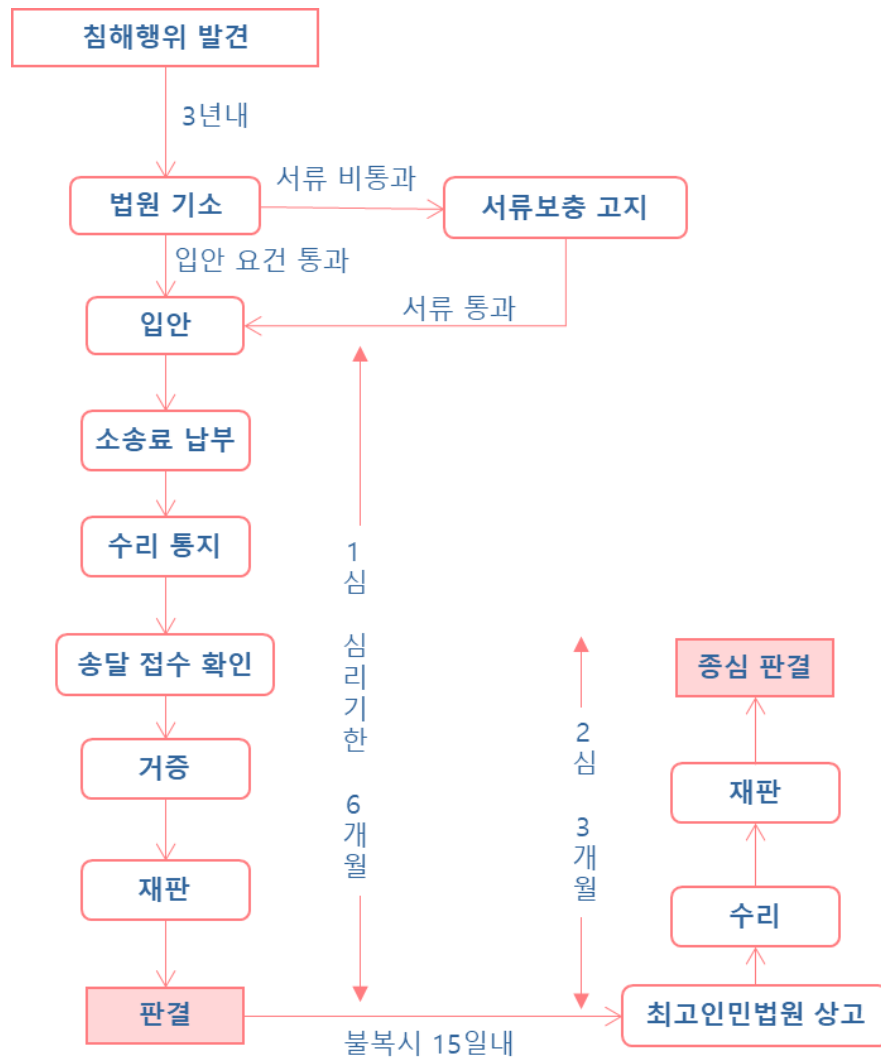


그림 5 특허침해 민사소송절차 흐름도

특허 권리를 최종 확정하는 행정소송은 행정적 심사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음에 대비해 민사소송은 절차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모두 더욱 복잡하고 기타 사법적인 규정을 교차적으로 인용해야 하므로 이하 자주 보는 주의사항 및 일부 요점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증거보전

증거보전은 증거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침해혐의자가 사전에 모르거나 미처 반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할 법원에 증거확보를 요청하는 원고가 자주 사용하는 조치이다. 법원을 통해 소송전 증거보전을 실시했을 시 15 일내로 기소를 해야 한다.

소송시효

소송시효항변은 자주 보는 항변수단의 일종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에 의하면 인민법원에 민사권리를 보호받을 것을 청구하는 소송시효는 3 년이고 이에 대응하도록 특허법에서는 특허권 침해 소송시효를 3 년으로 개정하고 있고,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날로부터 또는 인지해야 하는 날로부터 또는 피고를 인지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관할권에 대한 이의

더 많은 대응 시간을 쟁취하거나 보다 편리한 지역의 관할을 쟁취하기 위해 관할권 이의는 피고가 자주 사용하는 항변수단의 일종이다. 상술한 기소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 소재지외 침해발생지로 관할권 확정을 많이 하므로 관할권 확정을 위한 사전 증거 확보도 주의해야 한다.

특허권평가보고서

실용신안과 디자인 침해소송은 입안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요구하고 있다. 특허권평가보고서는 CNIPA 에 요청해야 하고 검색을 거쳐 신규성/진보성 등 실질적요건에 대한 심사를 보완하며 기 등록된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권리안정성을 평가한다. 평가보고서는 한번만 작성이 되며 현존하는 평가보고서에 대



해서는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새로운 평가 청구가 있을 시 현존 보고서를 발급한다.

무효심판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부분 피고는 무효심판 항변을 진행한다. 발명특허는 실질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었고 실용신안/디자인은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상황이므로 사건의 표적이 되는 특허권의 권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므로 침해 민사소송 과정 중 무효심판이 청구 되더라도 실무상 침해소송 절차는 중단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무효심판결과 특허권이 전부 무효화 되었을 시, 민사소송 청구사유의 권리반이 되는 특허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판사는 기소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증거

기소 및 입안에 필요한 서류 및 일부 증거 외에 원고는 특허권리 증거, 침해증거, 배상증거 등을 위주로 준비하게 되고, 피고는 항변증거 위주로 준비하게 된다. 증거의 종류는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8 가지이다.

특허권리 증거에는 특허증 외 권리청구범위를 확정하는 특허공보, 권리변화 등을 입증하는 특허등기원부의 부분, 특히 특허권리의 존속을 증명하는 연차료 납부 증빙이 포함된다.

특허침해 증거는 재판의 핵심과 가장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특히 하기의 침해행위가 맞는지를 입증하는 증거, 침해혐의 제품이나 행위가 특허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는 증거이다. 증거수집은 사전 진행이 필요하고



공증을 통한 증거확보, 법원을 통한 증거보전, 기술감정 등 조치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침해혐의제품이 방법특허와 다른 방법으로 제조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 또는 침해혐의자 이득액과 관련된 증거 등 원고가 획득하기 어려운 증거는 거증책임을 전환해 피고가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특허법에 의하면 재판에서의 배상액 확정은 증거에 따라 권리인의 손실액, 침해자의 이득액, 라이선스료를 근거로 확정하거나 법적 배상액의 순으로 확정한다. 제 4 차 특허법 개정에서의 관심사가 되는  고의 침해의 증거가 있을 시 최대 5 배의 배상금액으로 징벌책임을 부과한다.

침해행위 여부의 판정

특허권 침해의 판정에서 침해행위인지의 인정이 핵심중의 하나이다. 특허법 제 11 조에 의하면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구성요건은 1)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 2) 생산 경영을 목적으로 할 것, 3) 허가 없이 사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특허권 침해행위는 하기와 같은 구체적인 형태가 있을 수 있다. 1) 제품발명과 실용신안과 관련이 되는 사건에서는 특허권자의 허가 또는 기타 법적 근거가 없이 사적으로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허락, 판매, 수입하는 행위 등; 2) 방법발명과 관련이 되는 사건에서는 특허권자의 허가 또는 기타 법적 근거가 없이 사적으로 특허방법을 사용, 판매 허락, 판매, 특허방법으로 직접적으로 획득한 제품을 수입하는 행위 등; 3) 디자인 사건에서는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사적으로 디자인제품을 제조, 판매 허락, 판매, 수입하는 행위 등이다.

공동침해 행위의 판정에서 하위 행위에 공동침해의 고의가 없을 시 공동침



해의 연대 법적책임은 별도 판정해야 하는 문제이다.

특허권 침해행위로 보지 않는 일부 상황은 특허법 제 75 조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보호범위의 확정 및 보호범위에 속하는 지의 판단

본 부분은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의 핵심이다.

특허권의 보호범위의 확정에서 인민법원은 통상적으로 사법해석을 근거로 하여 기술에 대해 이해하며, CNIPA 는 심사지침서를 기반으로 기술 이해를 하므로 그 차이를 잘 알고 재판전략을 준비해야 한다. 보호범위는 원고가 청구하는 청구항에 한한다.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지에 대한 판단원칙은 특허권 유효원칙,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균등원칙 등이 있다.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은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각각의 모든 기술특징과 동일한 기술특징을 침해혐의 제품 및 방법에서 전부 찾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허 청구항의 기술특징이 상위 개념을 사용하고, 특허권 침해 혐의 제품 및 방법에서 하위 개념을 사용할 경우, 이는 동일한 기술특징에 속한다.

균등원칙은 청구항에 기재된 기술특징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실현하는 경우에 적용이 된다. 금반언의 원칙, 기부원칙은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축소해석하는 효과가 있고 균등원칙을 제한하며, 피고의 항변수단이 되기도 한다.



기타 항변

상술한 여러 요점중 피고가 할 수 있는 항변 외 하기와 같은 항변도 피고가 자주 이용하는 항변이므로 재판준비중 그 항변 가능성을 사전에 잘 검토할 수 있다. 1) 선행기술 또는 선행디자인 항변, 2) 권리소진 항변, 3) 선사용권 항변, 4) 임시통과 항변, 5)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한 사용 항변, 6) Bolar⁶예외(복제의약품 개발예외) 항변 등이다.

재판

재판 과정은 당사자 확인, 사건의 원인 선고, 재판인원 명단 선고, 당사자 권리의무 고지, 회피청구 여부 확인, 법정 조사, 당사자 진술, 증거 출시 및 증거 질의, 변론, 최후 진술, 재판정의 심리 및 판결 선고, 법정 기록 확인의 순으로 진행이 된다. 판결은 재판정 현장에서의 선고보다 사후 전달 선고가 더 많다.

2심 중심

중국 사법체계는 2심 중심제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보호 강화를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특허권관련 행정소송 및 민사 침해소송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상고시 최고인민법원에서 재판한다. 상고 기간은 1심 판결 접수일로부터 15일이고 연장불가하므로 마감일 모니터링에 주의해야 한다.

6 행정심사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허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제조, 사용, 수입할 경우는 침해로 보지 않는 제도, 미국 Bolar v.

Roche 사건으로부터 유래



부록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1984 년 3 월 12 일 제 6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 차 회의 통과, 1992 년 9 월 4 일 제 7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7 차 회의 '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의 개정 에 관한 결정 ' 을 근거로 제 1 차 개정, 2000 년 8 월 25 일 제 9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7 차 회의 '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의 개정 에 관한 결정 ' 을 근거로 제 2 차 개정, 2008 년 12 월 27 일 제 11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6 차 회의 '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의 개정 에 관한 결정 ' 을 근거로 제 3 차 개정, 2020 년 10 월 17 일 제 13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2 차 회의 '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 의 개정 에 관한 결정 ' 을 근거로 제 4 차 개정)

목록

- 제 1 장 총칙
- 제 2 장 특허권 부여요건
- 제 3 장 특허의 출원
- 제 4 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 제 5 장 특허권의 존속기간, 종료 및 무효
- 제 6 장 특허실시의 특별허가
- 제 7 장 특허권의 보호
- 제 8 장 부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 특허권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발명창조를 장려하며 발명창조의 응용을 보급하고 창조능력을 제고하며 과학기술진보와 경제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법에서의 발명창조는 발명, 실용 신안과 디자인을 말한다.

발명이란 제품, 방법 또는 그 개선을 위하여 제시하는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실용신안이란 제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결합을 위하여 제시하는, 실용에 적합한 새로운 기술방안을 말한다.

디자인이란 제품의 전체 혹은 부분⁷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을 위하여 미감이 풍부하고 공업응용에 적합한 새로운 디자인을 말한다.

제 3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국의 특허업무를 관리하고 통일적으로 특허출원을 수리, 심사하며 법에 의거하여 특허권을 부여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특허업무관리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의 특허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 4 조 특허 출원을 한 발명창조가 국가 안전 또는 중대한 이익과 관련되어 기밀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 법률, 사회도덕을 위반하거나 공공이익에 위배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아니 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유전자원을 취득, 이용하거나 당해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6 조 해당 기관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기관의 물질과 기술여건을 주로 사

⁷ 특허법 제 4 차 개정내용, 기타 상동



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창조로 간주한다. 직무발명창조의 특허출원권은 해당 기관에 귀속되며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해당 기관이 특허권자가 된다. 해당 기관은 직무발명 특허출원권리와 특허권을 법에 의해 처분하고 관련 발명창조의 실시와 운용을 촉진할 수 있다.

비직무 발명창조의 특허출원권은 발명인 또는 설계자에게 귀속된다.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해당 발명인 또는 설계자가 특허권자가 된다.

해당 기관의 물질과 기술여건을 사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로서 기관과 발명인 또는 설계자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특허의 출원권과 특허권의 귀속에 대해 약정하였을 경우 해당 약정에 따른다.

제 7 조 발명인 또는 설계자의 비직무 발명창조의 특허출원은 어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강제하여서는 안된다.

제 8 조 두 곳 이상의 기관이나 개인이 합작하여 공동 완성한 발명창조이거나 또는 하나의 기관이나 개인이 기타 기관이나 개인의 의뢰로 완성한 발명창조에 있어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특허출원권은 완성 또는 공동 완성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속한다. 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출원기관 또는 개인이 특허권자가 된다.

제 9 조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 단,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일자에 동일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의 등록과 발명특허를 출원하고 먼저 획득한 실용신안권이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원인이 당해 실용신안권의 포기를 성명한 경우에는 발명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출원인이 각기 같은 발명창조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경우 선출원인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제 10 조 특허출원권과 특허권은 양도할 수 있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에게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응당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양도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사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공고한다. 특허출원권 또는 특허권의 양도는 등록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11 조 발명과 실용신안 특허권을 부여한 후 이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하고서는 당해 특허를 실시해서는 아니되며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당해 특허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허락, 판매, 수입하거나 또는 당해 특허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직접 당해 특허방법으로 얻은 제품을 사용, 판매허락, 판매, 수입해서는 아니 된다.

디자인특허권을 부여한 후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를 획득하지 아니하고 당해 디자인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당해 디자인 권 제품을 제조·판매허락·판매·수입하여서는 안된다.

제 12 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을 불문하고 타인의 특허권의 실시는 특허권자와 실시허가계약을 체결하고 특허권자에게 특허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계약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당해 특허의 실시를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제 13 조 발명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은 당해 발명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적절한 비용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4 조 특허출원권이나 특허권 공유자가 당해 권리 행사에 대해 약정한 경우 당해 약정에 따른다. 약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일반 허가방식으로 타인에게 특허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타인에게 당해 특허 실시를 허가하는 경우 수취한 사용료는 응당 공유자간에 분배되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유 특허의 출원권 또는 특허권을 행사할 시에는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5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관은 직무 발명창조의 발명인 또는 설계자를 보상해야 한다. 발명창조 특허가 실시된 후에는 그 보급 응용범위와 획득한 경제수익에 따라 발명인 또는설계자에게 합리적인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국가에서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기관에 대해 재산권 배당 실시를 격려하며 주주권, 옵션, 보너스 등 방식으로 발명인 또는 설계자가 합리적으로 혁신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6 조 발명인 또는 고안자는 특허서류에 자신이 발명인 또는 고안자임을 명기할 권한이 있다.

특허권자는 당해 특허제품 또는 해당 제품의 포장에 특허표지를 명기할 수 있다.

제 17 조 중국에 일상적인 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그의 소속국가와 중국 간에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 및 이 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 18 조 중국에 일상적인 거주지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인, 외국기업 또는 외국의 기타 조직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 시에는 법에 의



해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해야 한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이 국내에서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 시에는 법에 의해 설립한 특허대리기구에 의뢰할 수 있다.

특허대리기구는 법률, 행정법규를 준수하고 의뢰자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특허 출원 또는 기타 특허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특허출원이 이미 공개 또는 공고된 경우를 제외하고 의뢰자의 발명창조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책임을 가진다. 특허대리기구에 대한 구체적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제 19 조 기관이나 개인 누구든지 중국에서 완성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외국에 출원할 경우에는 우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보고하여 비밀 심사를 마쳐야 한다. 비밀심사의 절차, 기한 등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의 기관이나 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국제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다. 출원인이 국제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 이 법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국제특허 출원을 처리한다.

이 조 제 1 항의 규정을 어기고 외국에서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한 후 다시 중국에서 특허 출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 20 조 특허 출원 및 특허권 행사는 성실신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 특허권을 남용하여 공공 이익이나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특허권 남용, 경쟁 배제 또는 경쟁 제한하여 독점행위가 구성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의해 처리한다.



제 21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객관, 공정, 정확, 적시의 요구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특허와 관련되는 신청과 청구를 처리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 정보 공공서비스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완벽, 정확, 적시에 특허정보를 발표하고, 특허 기본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특허정보를 출판하며, 특허정보 보급과 활용을 추진해야 한다

특허출원이 공개되거나 공고되기 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업무 인원 및 관련 인원은 그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다

제 2 장 특허권 부여요건

제 22 조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과 실용신안은 신규성, 진보성, 실용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신규성이란 당해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종래기술에 속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동일한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대해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이후에 공개된 특허 출원서류나 공고된 특허서류에도 기재된 것이 없음을 말한다.

진보성이란 종래기술에 비해 당해 발명이 선명한 실질적 특징과 현저한 진보가 있거나 그 실용신안이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는 것을 말한다.

실용성이란 당해 발명이나 실용신안이 제조 또는 사용이 가능하고 아울러 적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 법에서의 종래기술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의 공중이 숙지하고 있는 기술을 말한다.

제 23 조 특허권을 부여하는 디자인은 종래디자인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기관이나 개인 누구도 그와 같은 디자인에 대하여 출원일 이전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출원



한 적이 없으며 출원일 이후에 공고한 특허서류에도 기재된 것이 없어야 한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디자인은 종래 디자인 또는 종래 디자인의 특징의 조합과 비교할 때 뚜렷한 차별이 있어야 한다.

특허권을 부여하는 디자인은 타인이 출원일 이전에 이미 획득한 합법적인 권리와 충돌되어서는 안된다.

이 법에서의 종래 디자인이란 출원일 이전에 국내외의 공중이 숙지하고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제 24 조 특허를 출원하는 발명창조가 출원일 전 6 개월 내에 다음의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그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다.

- 1) 국가 긴급상태 혹은 비상 상황 발생시 공공 이익 목적을 위해 최초 공개된 경우
- 2) 중국정부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국제전시회에서 최초 전시된 경우
- 3) 규정된 학술회의나 기술회의에서 최초 발표된 경우
- 4) 타인이 출원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누설한 경우

제 25 조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1) 과학적 발견
- 2) 지능 활동의 법칙과 방법
- 3) 질병의 진단과 치료방법
- 4) 동물과 식물의 품종
- 5) 원자핵 변환방법 및 원자핵 변환방법으로 얻은 물질
- 6) 평면 인쇄물의 도안, 컬러 또는 양자의 결합에 대한 주로 로고작용을 하는 디자인



인

전항 제 4) 항에 열거한 제품의 생산방법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 장 특허의 출원

제 26 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 등록을 출원 시에는 청구서, 발명의 설명 및 요약서와 권리청구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명칭, 발명인의 성명,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기타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발명의 설명은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명료하고 완전한 설명을 하고 아울러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자가 실현이 가능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필요 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요약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권리청구서는 발명의 설명에 근거하여 권리보호 청구범위를 명료하고 간결하게 한정하여야 한다.

유전자원에 의해 완성한 발명창조일 경우 출원인은 특허 출원서류에서 당해 유전자원의 직접적인 출처와 원 출처를 설명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원 출처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그 이유를 진술해야 한다.

제 27 조 디자인 출원 시에는 청구서, 당해 디자인의 도면이나 사진, 당해 디자인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제출한 관련 도면, 사진은 보호하고자 하는 제품의 디자인을 확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제 28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 출원 서류를 접수한 날을 출원일로 간주한



다. 출원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우편 스탬프 일자를 출원일로 간주한다.

제 29 조 출원인이 외국에서 최초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내에 또는 외국에서 최초로 디자인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중국에서 같은 주제로 특허 출원을 한 경우 해당 외국과 중국 간에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으로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상호 인정하는 우선권 원칙에 의거하여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출원인이 중국에서 최초로 발명이나 실용신안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2 개월 내, **혹은 중국에서 최초로 디자인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6 개월 내에** 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같은 주제로 특허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을 향유할 수 있다.

제 30 조 출원인이 **발명, 실용신안**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출원서를 제출할 시 서면 성명을 발표하고 아울러 **최초로 출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16 개월** 내에 최초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디자인 우선권을 요구하는 경우 청구서를 제출할 시 서면 성명을 발표하고 아울러 **3 개월** 내에 최초 제출한 특허출원 서류의 부분을 제출하여야 한다.

출원인이 서면 성명을 발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이 경과하여도 특허출원 서류의 부분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권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31 조 하나의 발명이나 실용신안 등록출원은 하나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에 제한한다. 하나의 전체적 발명구상에 속하는 두 개 이상의 발명이나 실용신안은 한 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

한 건의 디자인 등록출원은 하나의 디자인에 한한다. 같은 제품의 두 개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 또는 같은 종류이면서 세트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두 개 이상의 디자인은 한 건으로 출원할 수 있다.



제 32 조 출원인은 특허권을 부여받기 전에 언제든지 당해 특허출원을 철회할 수 있다.

제 33 조 출원인은 당해 특허 출원서류를 보정할 수 있다. 단, 발명과 실용신안 등 등록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발명의 설명과 권리청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며, 디자인 등록출원 서류에 대한 보정은 원 도면 또는 사진이 표시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특허출원의 심사와 비준

제 34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출원을 접수한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이 법의 요구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출원일로부터 만 18 개월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출원서류를 공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3 년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이 수시로 제기한 청구에 근거하여 당해 출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 시 스스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 36 조 발명특허의 출원인이 실질적 심사를 청구 시에는 출원일 이전에 당해 발명과 관계되는 참조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 발명특허를 출원하였을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지정한 기한 내에 당해 국가에서 그 출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검색한 자료나 심사결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7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진행한 후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한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당해 출원의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답변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38 조 출원인이 그가 출원한 발명특허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였거나 보정을 거친 후에도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땅히 이를 거절하여야 한다.

제 39 조 실질적 심사를 거쳐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권의 부여를 결정하고 발명특허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등록하고 공고한다. 발명특허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0 조 초보적 심사를 거쳐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록 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의 부여를 결정하고 상응하는 권리증서를 발급하며 이를 등록하고 공고한다.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은 공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1 조 특허 출원인이 국무원특허행정 부서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국무원 특허행정 부서에 불복심판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불복심판 후 결정사항을 해당 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출원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불복심판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5 장 특허권의 존속기간·종료·무효

제 42 조 발명특허권의 기한은 20 년이며 실용신안권의 기한은 10 년이며 디자인권의 기한은 15 년으로 모두 출원일로부터 계산한다.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만 4 년 또한 실질 심사 청구일로부터 만 3 년뒤 특허권을 수여받은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해 발명특허 등록 과정에서의 비합리적인 지연에 대해 특허권 기한을 보상한다. 단 출원인이 일으킨 비합리적인 지연은 제외한다.

신약 출시 심사 비준 기간을 보상하기 위해 중국에서 출시 허가를 받은 신약 발명특허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의해 특허권 기한을 보상한다. 보상 기간은 5 년을 초과하지 않고, 신약 출시 후 유효 특허권 기한은 14 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43 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그 해부터 연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44 조 다음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특허권은 기한 만료 전에 종료된다.

1) 규정에 따라 연차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가 서면으로 당해 특허권을 포기하기로 성명을 발표한 경우

특허권이 기한 만료전에 종료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이를 등록하고 공고한다.

제 45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특허등록 공고한 날로부터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이라도 해당 특허 등록이 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해당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 46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를 적시에 심사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를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허권의 무효심판의 결정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등록하고 공고한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특허권 무효 또는 특허권 유지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무효심판 절차를 청구한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제 3 자의 신분으로 소송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7 조 무효선고를 받은 특허권은 최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특허권의 무효심판 결정은 특허권 무효를 선고하기 전에 이미 집행된 인민법원의 특허권 침해에 대한 판결과 조정서, 이미 이행되었거나 강제집행된 특허권 분쟁처리 결정, 그리고 이미 이행된 특허실시허가계약과 특허권 양도계약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단, 특허권자가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 침해배상금, 특허사용료, 특허권 양도료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공정 원칙에 뚜렷이 위배되는 경우 응당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



다.

제 6 장 특허실시의 특별허가

제 48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 지방인민정부 특허관리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특허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실시와 운용을 추진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49 조 국유기업과 사업기관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그 비준 범위 내에서의 보급 응용을 결정하며 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비준 범위 내에서의 보급 응용을 결정하며 실시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실시기관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50 조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서면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에게 특허 실시 라이선스를 동의한다고 성명하고 또한 라이선스 사용료 지불 방식, 표준을 명확히 하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여 오픈 라이선스를 실시한다.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해 오픈 라이선스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허권자가 오픈 라이선스 성명을 철회하려면 응당 서면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서 공고한다. 오픈 라이선스 성명이 철회 공고된 경우 그 전에 부여된 오픈 라이선스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51 조 임의의 기관이나 개인이 오픈 라이선스 특허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특허



권자에게 서면방식으로 통지하고 공고된 라이선스 사용료 지불방식, 표준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료를 지불 후 특허실시 라이선스를 갖는다.

오픈 라이선스 실시 기간내에 특허권자에게 특허 연차료 납부 비용에 대해 적당히 감면한다.

오픈 라이선스를 실시한 특허권자는 라이선시와 라이선스 사용료에 대해 협상을 하여 통상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으나 당해 특허에 대해 독점 라이선스 혹은 배타(排他)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없다.

제 52 조 오픈 라이선스 실시에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당사자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으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도 있다.

제 53 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 기관이나 개인의 청구에 근거하여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 년이 만료됨과 아울러 특허 출원을 제출할 날로부터 4 년이 만료되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특허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충분히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 행위가 법에 의해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경쟁에 미치는 당해 행위의 불리한 영향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경우

제 54 조 국가에 긴급사태 또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공공이익을 위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55 조 공중의 건강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을 획득한 약품을 제조하게 하고 아울러 그 약품을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한 국가나 지역에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 56 조 특허권을 획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특허권을 이미 획득한 이전의 발명이나 실용신안보다 현저한 경제적 의미를 가지는 중대 기술진보가 있으나 그의 실시가 이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실시에 의존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 특허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이전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또한 전 특허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그에게 이후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하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제 57 조 강제허가와 관련되는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이익을 위함과 아울러 이 법 제 53 조 제 2)항에서 규정한 상황에만 국한된다.

제 58 조 이 법 제 53 조 제 2)항, 제 50 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강제허가를 제외한 기타 강제허가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 59 조 이 법 제 53 조 제 1)항, 제 56 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허가를 청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그가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해당 특허실시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허가를 획득하지 못한 관련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60 조 공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적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등록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강제허가 실시부여의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그 실시 범위와 기간을 규정하여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소멸되고 재차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따라 심사한 후 강제허가 실시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 61 조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당해 실시권을 독점하여서는 아니되며 타인에게 실시허가의 권한을 승낙할 수 없다.

제 62 조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문제를 처리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쌍방이 협상을 통해 약정하며 협상이 이루어 지지 못한 경우 공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결재한다.

제 63 조 특허권자가 공무원 특허행정부서의 강제허가 실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또는 특허권자와 강제허가 실시를 부여받은 기관이나 개인이 공무원 특허행정관리 부서의 강제허가 실시 사용료에 대한 결재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7 장 특허권의 보호

제 64 조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권에 대한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의 내용에 준하며 발명의 설명과 첨부도면은 권리청구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제품의 디자인에 준하며 간



단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당해 제품의 디자인의 해석에 사용할 수 있다.

제 65 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획득하지 않고서 당해 특허를 실시하여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협상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이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특허업무관리부서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관리부서가 특허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자에게 권리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처리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기한이 만료되어도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특허업무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 배상금액에 대해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을 거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66 조 특허권 침해 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의 발명특허와 관련되는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기관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해당 특허방법과 다르다는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특허권 침해 분쟁이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과 관련되는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이나 디자인에 대해 검색, 분석, 평가를 실시하여 작성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여 특허권 침해 분쟁을 심리, 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특허권자, 이해관계자 혹은 침해피고인도 자발적으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시할 수 있다.

제 67 조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권리침해 소송상대자가 그가 실시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종래 기술 또는 종래 디자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가 구성되지 않는다.

제 68 조 특허 모조시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어야 하는 것 이외에도 특허법 집행 담당부서는 그를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함과 동시에 하고 위법소득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혹은 위법 소득이 오만 CNY 이하일 경우 이십오만 CNY 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69 조 특허법 집행담당부서는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 모조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 처리할 시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 1) 관련 당사자에게 질의하고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되는 상황을 조사
- 2) 당사자의 불법행위 혐의와 관련된 장소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 3) 불법행위의 혐의가 있는 계약, 영수증, 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열람, 복제
- 4)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제품을 검사
- 5) 특허 모조제품으로 증명된 경우 차압, 압류

특허업무관리부서는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의 요청으로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시 상기 1) 2) 4)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법 집행담당부서 및 특허업무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전 두항에서 규정한 직권을 행사할 시 당사자는 그에 협조하여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를 해서는 안된다

제 70 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의해 전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 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지방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의 청구로 특허침해 분쟁을 처리하고, 본 행정 구



역내에서 동일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합병 처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행정 구역에서 동일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관리부서에 청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71 조 특허권 침해의 배상금액은 권리침해로 인한 권리인의 실제 손실 혹은 권리침해로 얻은 권리침해자의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혹은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특허 라이선스 사용료의 배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고의적인 특허 침해에 대해 사안이 심각한 경우 상술 방법으로 확정한 금액의 1 배 이상 5 배 이하로 배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 권리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 라이선스 사용료를 모두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권리침해 행위의 성질 및 사안 등 요소에 근거하여 삼만 CNY 이상 오백만 CNY 이하의 배상을 결정할 수 있다.

배상금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지출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권리자가 최선을 다하여 거증했고, 권리침해 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가 주로 권리침해자에 의해 확보된 경우 권리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 자료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장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허위 장부,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 72 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타인이 해당 특허권을 실시하고 있거나 곧 실시하게 되어 권리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시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대해 만회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기소하기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산 보전과 명령을 통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3 조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소멸될 수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기소하기 전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제 74 조 특허권 침해의 소송시효는 3 년으로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권리 침해 행위 및 권리침해자를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발명특허 출원이 공개된 후부터 특허권을 수여받기 전에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도 적절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특허권자가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시효는 3 년이며, 특허권자가 타인이 해당 발명을 사용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단,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부여하기 전에 이미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권 부여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75 조 다음의 상황 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특허권 침해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 1) 특허권자 또는 그의 허가를 얻은 기관, 개인이 특허제품이나 특허방법에 의해 직접 얻은 제품을 판매한 후 그 제품을 사용, 판매허락, 판매, 수입한 경우
- 2)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였거나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제조, 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경우
- 3) 중국의 영토, 영해, 영공을 임시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수단으로서 그 소속국가와 중국 사이에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의 원칙에 따라 운송수단의 자체 수요에 의해 그 장치와 설비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 4) 전문적 과학연구와 실험을 위하여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심사비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사용, 수입하거나 또는 그를 목적으로 특허약품이나 특허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 수입하는 경우

제 76 조 약품 출시 심사 승인 과정에서 약품 출시 허가 신청자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등록신청한 약품의 특허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한 약품의 관련 기술방안이 타인의 약품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규정한 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효력이 발생한 판결에 따라 해당 약품의 출시 승인을 일시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약품 출시 허가 신청자와 관련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도 등록신청한 약품 관련 특허권 분쟁에 대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행정결재를 청구 할 수 있다.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약품출시 허가승인과 약품출시 허가 신청단계 특허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연결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한다.

제 77 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획득하지 않은 것을 모르고 생산경영을 목적으로 제조 및 판매한 특허권 침해제품을 사용, 판매허락, 판매한 경우 당해 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할 수 있으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78 조 이 법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재기관 또는 상급 주관기관은 그를 행정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 79 조 특허업무관리부서는 사회에 특허 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특허업무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검찰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제거하며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한다**.

제 80 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의 담당자와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담당자가 직무태만, 직권남용, 사리사욕 부정부패로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해 형사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하여 **처분한다**

제 8 장 부칙

제 81 조 국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에 특허를 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할 것을 청구할 시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2 조 이 법은 1985 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KOTRA 자료 21-298

중국 특허 실무 가이드

발 행 인 | 유정열

발 행 처 | KOTRA (해외지재권실, 상하이무역관 IP-DESK)

발 행 일 | 2022 년 1 월

주 소 | (06792)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 화 | 1600-7119 (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저 자 | 赵爱玲 (조애령) 변호사/변리사

北京路浩知识产权代理有限公司

베이징 CN-KnowHow 특허법률사무소

ISBN

979-11-402-0201-0 (93320)

979-11-402-0202-7 (95320) (PDF)

Copyright ©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 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은 저작물이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동의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